하 동 군

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제468호 2016. 11. 10. (목요일)

조	례		
○ 하동군○ 하동군○ 하동군○ 하동군○ 하동군○ 하동군○ 하동군	조례 제2177호 조례 제2178호 조례 제2179호 조례 제2180호 조례 제2181호 조례 제2182호 조례 제2183호 조례 제2184호 조례 제2185호	하동군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 · · · · · 2 하동군 최참판댁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 · · · · 4 하동군 지리산 생태과학관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 · · · 6 하동군 장애인생활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 · · · 8 하동군 부동산평가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 · · · · · · · 10 하동군 군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 · · · · · · · · · · · · 17 하동군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 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 · · · · · · · · · · · · · · · · · ·	7
규 () 하동군 고	최 규칙 제1154호 시	하동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43	3
○ 하동군	고시 제2016-141호 고시 제2016-142호 고시 제2016-144호	지방도1047호선(삼성궁~회남재 구간) 교통통제 공고 · · · · · · · 55 도로명주소 개별고시(208차) · · · · · · · · · · · · · · · · · 57 하천공사 시행계획 고시 · · · · · · · · · · · · · · · · 59	7
입법	예고		
○ 하동군	공고 제2016-1031호 공고 제2016-1033호 공고 제2016-1056호	하동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60 하동군 옥외광고물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82 하동군 공용차량 관리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입법예고··· 92	2
	고 공고 제2016-1034호 공고 제2016-1041호	2016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및 이의신청 안내···· 96 개별주택가격 정정 공고······ 97	

회					
람					

발행 : 하동군 편집 : 기획조정실 (055)880-2042, 행정2042

하동군의회에서 의결된 「하동군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16년 11월 10일

하동군수 윤상기 🖸

하동군 조례 제2177호

하동군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하동군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휴양 콘도미니엄업"이란 법 제3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업을 말한다

제12조를 제13조로 하고, 제12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휴양 콘도미니엄업 등록기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조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에서 휴양 콘도미니엄업을 등록하려는 자는 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가목(2)에 따라 객실 밖에 관광객이 이용할수 있는 공동취사장 등 취사시설을 갖춘 경우에는 총 객실의 30퍼센트의 범위에서 객실에 취사시설을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3)제 468 호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	제2조(정의)
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u><신 설></u>	5. "휴양 콘도미니엄업"이란 법 제3
	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업을 말
	<u>한다.</u>
<u><신 설></u>	제12조(휴양 콘도미니엄업 등록기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
	률」 제6조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에
	서 휴양 콘도미니엄업을 등록하려는
	자는 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가목(2)
	에 따라 객실 밖에 관광객이 이용할
	수 있는 공동취사장 등 취사시설을
	<u>갖춘 경우에는 총 객실의 30퍼센트</u>
	의 범위에서 객실에 취사시설을 갖
	추지 아니할 수 있다.
<u>제12조</u> (생 략)	<u>제13조</u> (현행 제12조와 같음)

(4)제 468 호

하동군의회에서 의결된 「하동군 최참판댁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 례를 이에 공포한다.

2016년 11월 10일

하동군수 윤상기 🗈

하동군 조례 제2178호

하동군 최참판댁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하동군 최참판댁 관리 및 운영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1]

입 장 료(제7조 관련)

(단위 : 원)

	요 금			
구 분	개별권		통합	합권
	개인	단체	개인	단체
어린이(8세 이상 13세 이하)	1,000	500	1,400	800
청소년(14세 이상 19세 이하) 군인(하사관 이하 군인)	1,500	1,000	2,000	1,400
어른(20세 이상 64세 이하)	2,000	1,500	2,600	2,000

※ 개별권 : 최참판댁을 입장하는 경우

※ 통합권 : 최참판댁과 지리산생태과학관을 연계하여 이용하는 경우

※ 입장료 50% 감경 : 남중권 지역 주민인 경우(단, 단체는 미적용)

- 남중권 지역 : 진주, 사천, 남해, 여수, 순천, 광양, 고흥, 보성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별표 1]

입 장 료(제7조 관련)

(단위 : 원)

[별표 1]

입 장 료(제7조 관련)

(단위 : 원)

	요 금				
구 분	개별권		통합권		
	개인	단체	개인	단체	
어린이(8세 이상 13세 이하)	1,000	500	1,400	800	
청소년(14세 이상 19세 이하) 군인(하사관 이하 군인)	1,500	1,000	2,000	1,400	
어른(20세 이상 64세 이하)	2,000	1,500	2,600	2,000	

※ 개별권 : 최참판댁을 입장하는 경우

※ 통합권: 최참판대과 지리산생태과학관을

연계하여 이용하는 경우

<u><신 설></u>

	요금				
구 분	개별권		통합권		
	개인	단체	개인	단체	
어린이(8세 이상 13세 이하)	1,000	500	1,400	800	
청소년(14세 이상 19세 이하) 군인(하사관 이하 군인)	1,500	1,000	2,000	1,400	
어른(20세 이상 64세 이하)	2,000	1,500	2,600	2,000	

※ 개별권 : 최참판댁을 입장하는 경우

※ 통합권 : 최참판댁과 지리산생태과학관을

연계하여 이용하는 경우

※ 입장료 50% 감경 : 남중권 지역 주민인 경

우(단, 단체는 미적용)

- 남중권 지역 : 진주, 사천, 남해,

여수, 순천, 광양, 고흥, 보성

(6)제 468 호

하동군의회에서 의결된 「하동군 지리산생태과학관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 개정조례를 이에 공꾸한다.

> 2016년 11월 10일 하동군수 윤상기 🗊

하동군 조례 제2179호

하동군 지리산생태과학관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

하동군 지리산생태과학관 운영 및 관리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 다.

별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과학관 관람료(제8조 관련)

(단위 : 원)

		뀽	급	
구 분	개념	별권	통합	합권
,	개인	단체 (20명이상)	개인	단체 (20명이상)
어린이(8세 이상 13세 이하)	600	400	1,400	800
청소년(14세 이상 19세 이하) 군인(하사관 이하 군인)	800	600	2,000	1,400
어른(20세 이상 64세 이하)	1,000	800	2,600	2,000

※ 개별권 : 지리산생태과학관을 관람하는 경우

※ 통합권 : 지리산생태과학관과 최참판댁을 연계하여 이용하는 경우

※ 관람료 50% 감경 : 남중권 지역 주민인 경우(단, 단체는 미적용)

- 남중권 지역 : 진주, 사천, 남해, 여수, 순천, 광양, 고흥, 보성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시.	구조문	대비표	
'a'' '	1 2-11.	네비됴	

행 개 정 안 혉

[별표]

과학관 관람료(제8조 관련)

(단위 : 원)

[별표]

과학관 관람료(제8조 관련)

(단위 : 원)

	요금				
	개별권		통합권		
구 분	개인	단체 (20명 이상)	개인	단체 (20명 이상)	
어린이(8세 이상 13세 이하)	600	400	1,400	800	
청소년(14세 이상 19세 이하) 군인(하사관 이하 군인)	800	600	2,000	1,400	
어른(20세 이상 64세 이하)	1,000	800	2,600	2,000	

※ 통합권: 지리산생태과학관과 최참판

댁을 연계하여 이용하는 경

우

*	개별전	•	시리산생태파악판을	판담하
			는 경우	

<신 설>

	요급				
	개별권		통합권		
구 분 	개인	단체 (20명 이상)	개인	단체 (20명 이상)	
어린이(8세 이상 13세 이하)	600	400	1,400	800	
청소년(14세 이상 19세 이하) 군인(하사관 이하 군인)	800	600	2,000	1,400	
어른(20세 이상 64세 이하)	1,000	800	2,600	2,000	

※ 개별권 : 지리산생태과학관을 관람하

는 경우

※ 통합권 : 지리산생태과학관과 최참판

댁을 연계하여 이용하는 경

※ 관람료 50% 감경 : 남중권 지역 주민인 경

<u> 우(단 단체는 미적용)</u>

- 남중권 지역 : 진주, 사천, 남해, 여수,

순천, 광양, 고흥, 보성

(8)제 468 호

하동군의회에서 의결된 「하동군 장애인 생활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16년 11월 10일

하동군수 윤상기 🗈

하동군 조례 제2180호

하동군 장애인 생활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하동군 장애인 생활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수탁기간 동안 수탁자가 취득한 재산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8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거주시설의 이용대상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인 1 급, 2급 중증장애인을 우선으로 하고, 수급자가 아닌 중증장애인의 입소는 정원 30퍼센트 범위 안으로 한다.

제8조제2항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수급자가 아닌 장애인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수급자 중 2급 이하 장애인"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가 아닌 장애인"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	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7조(위탁의 취소) ① (생 략)	제7조(위탁의 취소)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라 위탁이 취소되었을	2
때에는 생활시설 운영에 사용하던	
기본부대시설, 장비와 비품 및 집기	
는 군에 귀속한다. <후단 신설>	<u>다만, 수탁기간 동안</u>
	수탁자가 취득한 재산은 그러하지
	<u>아니한다.</u>
제8조(이용대상) ① 생활시설의 이용대	제8조(이용대상) ① 생활시설의 이용대
<u>상은 「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u>	<u>상은「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u>
장애인 중 지적 또는 뇌병변 장애인	수급자인 1급, 2급 중증장애인을 우
과 지적 장애인으로서 장애인 1급으	선으로 하고, 수급자가 아닌 중증장
로 등록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애인의 입소는 정원 30퍼센트 범위
에 따른 수급자인 장애인을 우선으	<u>안으로 한다.</u>
로 하고 수급자가 아닌 장애인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수급자 중 2	
급 이하 장애인의 입소는 정원 30퍼	
센트 범위 안으로 한다.	
 ② 「국민기초생활보장법」수급자가	②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아닌 장애인과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아닌 장애인
법」수급자 중 2급 이하 장애인의 이	<u> </u>
용대상은 하동군 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용 여부를 결정한다.	

하동군의회에서 의결된 「하동군 부동산평가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 를 이에 공포한다.

2016년 11월 10일

하동군수 윤상기 🗈

하동군 조례 제2181호

하동군 부동산평가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

하동군 부동산평가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하동군 부동산평가위원회 조례"를 "하동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운영 조례"로 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본 조례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4조제5항에 따라 하동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제1항 중 "위원회"를 "하동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로 한다.

(11) 제 468 호

제3조제2항 중 "사고가 있을"을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로 한다.

제4조제7호를 같은 조 제9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7호 및 제8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7.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의 결정에 관한 사항
- 8.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제4조제9호(종전의 제7호) 중 "부의하는"을 "회의에 부치는"으로 한다.

제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 제6조(위원의 위촉 해제)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 2.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 3. 직무태만, 품위손상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직을 유지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 5. 제6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제6조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6조2(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 (당사자가 법인·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12) 제 468 호

-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 5.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같은 감정평가법인 또는 감정평가사무소에 소속된 경우
-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제7조제4항을 같은 조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심의안건이 경미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서면심의를 할 수 있다.

제7조제5항(종전의 제4항) 중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규정된 것 이외"를 "그 밖"으로, "관하여 필요"를 "필요"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혂 행 개 정 안 하동군 부동산평가위원회 조례 |하동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운영 조례 제1조(목적) 본 조례는 「부동산 가│제1조(목적) 본 조례는 「부동산 가 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 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25조 및 률」 제20조에 따른 하동군 부동ㅣ 같은 법 시행령 제74조제5항에 따 산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 른 하동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다)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 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 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① 하동군 부동산가격 제2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공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 이상 15명 이하로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다 ② · ③ (생 략) ② · ③ (현행과 같음) 제3조(위원장의 직무) ① (생 략) ┃세3조(위원장의 직무) ① (현행과 같 음)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 직무를 대행한다. 를 수행할 수 없--. 제4조(심의사항) 위원회의 심의사항 제4조(심의사항) ----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 6. (현행과 같음) 1. ~ 6. (생 략)

<u><신 설></u>

<신 설>

7. 그 밖에 군수가 부의하는 사항

- 제6조(위원의 위촉 해제) 군수는 다 제6조(위원의 위촉 해제) 군수는 위 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 전이라도 |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 1. 위원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 지 아니할 때
 - 2. 위원회의 자문업무와 관련하여 지득한 기밀 등을 누설한 때
 - 3. 위원회의 자문업무와 관련하여 | 민원을 야기할 때
 - 4. 위원 스스로가 위촉 해제를 원 할 때
 - 5. 그 밖에 위원으로서의 품위 등 을 손상, 위원으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신 설>

- 7.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의 결 정에 관한 사항
- 8.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에 대 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 9. ----- 회의에 부치 는 --
- 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위 촉 해제할 수 있다
 -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 행할 수 없게 된 경우
 - 2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 는 경우
- 3. 직무태만, 품위손상 또는 그 밖 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직을 유지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 다고 인정되는 경우
-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 제6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제6조의2(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除 床)된다.
-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 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 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 체 등이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 인 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 5.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같은 감정평가법인 또는 감정평 가사무소에 소속된 경우
-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 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 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제7조(회의 및 의사) ① ~ ③ (생 략)

<u><신 설></u>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규정된

 건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

 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

 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 첫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 제7조(회의 및 의사) ① ~ ③ (현행 과 같음)
 - ④ 심의안건이 경미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할 때에는 서면심의를 할 수 있다.
 - ⑤ <u>그 밖----- 필요</u>--

(17) 제 468 호

하동군의회에서 의결된 「하동군 군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 2016년 9월 27일 하동군수 윤상기 ¹

하동군 조례 제2182호

하동군 군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

하동군 군세 감면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하동군 군세의 감면에 관한 사항과 이의 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건전한 지방재정 운영 및 지역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감면

제2조(시각장애인 소유자동차에 대한 감면) ①「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지방세특례제한법」제29조제4항에 따른 국가유공자등은 제외한다)으로서 시각장애등급 4급에 해당하는 장애인이 본인 명의로 등록하거나그 장애인과「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배우자 또는 직계비속의 배우자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경우로 한정한다)또는「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이하 "세대별 주민등록표"라한다)에 따라 세대를 함께 하는 것이 확인되는 배우자·직계존속(직계존속의 재혼한 배우자를 포함한다)·직계비속(재혼한 배우자의 자녀를 포함한다)·형제자매 또는 직계비속의 배우자가 공동명의로 등록하여 보철용·생업활동용으로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지방세특례제한법」(이하 "법"이라한다) 제17조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자동차로서 취득세 또는「지방세법」제125조제1

(18) 제 468 호

항에 따른 자동차세(이하 "자동차세"라 한다) 중 어느 하나의 세목(稅目)에 대하여 먼저 감면을 신청하는 1대에 대해서는 자동차세를 2018년 12월 31일까지면제한다.

- ② 장애인이 대체취득(제1항에 따라 면제받은 자동차를 말소등록하거나 이전 등록하고 다시 취득하는 것을 말하며, 취득하여 등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취득세 또는 자동차세를 면제받은 종전 자동차를 말소등록하거나 이전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 해당 자동차에 대해서는 제1항에 따라 자동차세를 면제한다.
- ③ 제1항에 따라 자동차세를 면제받은 자동차가「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제8조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장부상 등록 여부에도 불구하고 자동차를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본다.
- 제3조(종교단체의 의료업에 대한 감면) 법 제38조제4항제2호에 따른 재산세 (「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의 "조례로 정하는 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2016년 12월 31일까지 : 100분의 75
 - 2. 2017년 1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 : 100분의 50
- 제4조(문화재에 대한 감면) ①「경상남도 문화재보호 조례」에 따라 문화 재로 지정된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 과액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2017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하고, 같은 조례에 따라 지정된 문화재보호구역안의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2017년 12월 31일까지 100분의 50으로 한다.
 - ② 법 제55조제2항제1호에 따른 재산세 추가 경감률은 100분의 50으로 한다.

제5조(지역특산품생산단지에 대한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 하는 자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제50조제1항에 따른 지역특산품 생산단지에서 2017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 소재하는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와 이미 해당사업용으로 사용하던 부동산을 승계하여 취득 한 경우 및 과세기준일 현재 60일 이상 휴업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대해서 는 해당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 다.
 - 1.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50조제1항에 따른 지역특산품 생산 단지의 지정을 받은 자
 - 2. 「식품산업진흥법」제19조의3제1항에 따른 농산물가공품 생산을 업으로 하거나 하려는 자
 - 3. 「식품산업진흥법」제19조의4제1항제1호에 따른 수산가공품의 생산· 개발·수출촉진 및 수산가공품 전문판매점을 설치·운영을 하려는 자
- 제6조(외국인 투자유치 지원을 위한 감면) 「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2제4항 및 같은 조 제1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감면 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같은 법 제121조의5제3항에 따른 추정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감 면된 재산세를 추정한다.
 - 1.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4항제1호 및 같은 항 제2호 단서 외의 본문의 "5년"을 "7년"으로 하고. "2년"을 "3년"으로 한다.
 - 2. 「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2제12항제3호가목 및 나목의 "3년"을 "7년"으로 하고, "2년"을 "3년"으로 한다.
- 제7조(농공단지 대체입주자에 대한 감면)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공단지에서 휴업(「부가가치세법」제8조에 따라 휴업 신고한 날부터 6개월이 경과한 경우에 한정한다) 또는 폐업(폐업한 날부터 3개월이 경과한 경우에 한정한다)된 공장을 취득하여 입주하려는 자가 2017년 12월 31일까

(20) 제 468 호

지 취득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해당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3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 제8조(기업도시 및 지역개발사업구역 내 창업기업 등에 대한 감면) 법 제75조의2 제1항에 따른 "조례로 정하는 감면율"은 100분의 100으로 한다.
- 제9조(시장현대화사업에 대한 감면)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시장의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가 정부 또는 지방자치 단체로부터 지원받거나 보조받아 추진되는 상업기반시설 현대화사업의 시행으로 취득하는 건축물을 과세기준일 현재 같은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재산세(「지방세법」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를 2017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 제10조(자동계좌이체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 ① 법 제92조의2제1항 각 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금액"은 다음과 같다.
 - 1. 자동계좌이체 방식에 의한 납부만을 신청한 경우 : 고지서 1장당 150 원
 - 2. 자동계좌이체 방식과 전자송달 방식에 의한 납부를 모두 신청한 경우 : 고지서 1장당 300원
 - ② 제1항에 따른 세액공제 순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 보통세와 목적세가 병기된 경우에는 보통세를 우선 공제
 - 2. 본세의 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지방교육세는 가장 후순위 공제
- 제11조(주민등록 전입세대에 대한 감면) 「하동군 인구증대시책 지원 조례」에 해당하는 전입세대 중 「지방세법」제79조제2항에서 규정한 과세기준일 현재 주민세 개인 균등분 납세의무자에 대해서는 주민세 개인 균

(21) 제 468 호

등분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된 날부터 2년간 면제한다. 단, 2017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제12조(복합물류터미널사업시행자의 물류터미널 공사계획에 대한 재산세 감면)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라 복합물류터미널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라 인가받은 공사계획을 시행하기 위한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법 제71조제4항에 따라 같은 조 제3항의 경감률에 추가하여 재산세를 경감하는 율은 100분의 50으로 하여 2017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제3장 보칙

- 제13조(직접 사용의 의미) 이 조례에서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감면규정을 적용할 때 직접 사용의 범위에는 해당 감면대상 업무에 사용할 건축물을 건축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 제14조(감면 제외대상) 이 조례의 감면을 적용할 때 「지방세법」제13조제5항에 따른 부동산 등은 감면대상에서 제외한다.
- 제15조(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감면율 적용) 이 조례에서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감면규정을 둔 경우에는 감면대상 토지의 과세표준액에 해당 감면비율을 곱한 금액을 감면한다.
- 제16조(중복감면의 배제) 동일한 과세대상에 대하여 군세를 감면함에 있어 둘이상의 감면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법 제180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 제17조(지방세 감면 특례의 제한) 법 및 이 조례에 따라 재산세가 면제(세액 감면율이 100분의 100인 경우와 세율경감률이 「지방세법」에 따른 해당 과세대상에 대한 세율 전부를 감면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22) 제 468 호

되는 경우에는 100분의 85에 해당하는 감면율을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1. 「지방세법」에 따라 산출한 재산세의 세액이 50만원 이하(「지방세법」 제122조에 따른 세 부담의 상한을 적용하기 이전의 산출액을 말한다)에 해당하는 경우
- 2. 제4조 및 제9조에 따른 감면
- 제18조(감면신청 등) ① 이 조례에 따라 군세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지방세감면신청서 및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는 감면대상임을 알 수 있을 때에는 신청이 없는 경우라도 직권으로 감면할 수 있다.
 -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감면여부를 조사·결정하고 그 내용을 규칙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③ 제2조에 따라 시(군)세를 감면하는 경우에는 자동차 사용본거지를 관할하지 아니하는 시장·군수·구청장도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를 처리할수 있으며, 이 경우 사용본거지 관할 시장(군수)가 처리한 것으로 본다.
 - ④ 제3항에 따라 해당 자동차 사용본거지를 관할하지 아니하는 시장·군수· 구청장이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업무를 처리한 경우에는 관련 서류 모두를 해당 자동차의 사용본거지 관할 시장(군수)에게 즉시 이송하여야 한 다.
- 제19조(감면자료의 제출) 이 조례에 따라 군세를 감면 받은 자는 법 제184조에 따라 군수에게 감면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 제20조(감면기한의 특례) 이 조례에서 감면기한을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군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23) 제 468 호

하동군의회에서 의결된 「하동군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 · 운영 및 주민참 여 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16년 11월 10일

하동군수 윤상기 🗈

하동군 조례 제2183호

하동군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 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하동군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하동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임명하거나 위촉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2조제2항제1호 중 "에 따른 대학"을 "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따른 학교"로, "중에 있는 자"를 "중인 사람"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자로서"를 "사람으로서"로, "풍부한 자"를 "풍부한 사람"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추천하는 자"를 "추천하는 사람으로서 회계 및 조달계약 업무에 관한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사람"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건설기

(24) 제 468 호

술관리법」에"를 "「건설기술 진흥법」에"로, "관계법령"을 "관련 법령"으로 하며.

같은 항 제5호를 "「지방재정법」제91조에 따른 재무관 또는 분임재무관"으로 하고, 같은 항 제6호 중 "공무원"을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으로, "있는 자"를 "풍부한 사람"으로 한다.

제3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위원 중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4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하동군에서 발주하는 추정가격 50억원 이상인 공사 및 10억원 이상인 물품 용역 등의 계약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다만, 긴급한 재해복구사업,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을 조기 집행할 필요가 있는 사업은 제외한다.

가.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참가자의 자격제한에 관한 사항

나. 계약체결 방법에 관한 사항

다. 낙찰자 결정방법에 관한 사항

같은 항 제2호 및 제3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4호를 제2호로 하며,

같은 항 제5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6호를 제3호로 한다.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한다.

제5조제1항 중 "심의 또는 자문이"를 "심의가"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심의 또는 자문을"을 "심의를"로, "심사 또는 자문대상"을 "심의"로, "심의 또는 자문"을 "심의위원회"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심의 또는 자문을"을 "심의를"로, "심의 또는 자문"을 "심의"로 한다.

제7조 중 "심의 또는 자문을"을 각각 "심의를"로, "심의 또는 자문요청서"를 "심의요청서"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심의 또는 자문요청서"를 "심의요청서"로 하고, 같은 조제2항 본문 중 "심의 또는 자문회의"를 "심의위원회"로 하며, 같은 항 단서 중 "심의 또는 자문기간"을 "심의위원회 기간"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심의 또는 자문한 결과"를 "심의결과"로 한다.

제9조 중 "심의 또는 자문을"을 "심의를"로 한다.

제10조제2항 중 "자문결과의"를 "심의결과"로 한다.

제11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 제12조제9호를 제10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9. 수해복구 공사로서 하천, 도로, 상하수도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군수가 판단하는 공사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혀 했 개 정 안

제2조(계약심의위원회 구성) ① (생 략)

제2조(계약심의위원회 구성) ① (현 행과 같음)

- ② 위원장은 하동군의 본청재무관 | 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 군수가 위촉한 자로 하며, 이 경기 우 군수는 영 제106조제3항에 따 라 도지사가 작성한 위원 자격을 | 갖춘 전문가 현황이 있는 경우 이를 활용하여 위촉할 수 있다.
- ②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 서 성별을 고려하여 하동군수(이 하"군수"라 한다)가 임명하거나 위촉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 1.「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에 서 관련 분야의 교수(부교수·조교 수를 포함한다)로 재직 중에 있는 자
- 1.「고등교육법」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따른 학교-----
- 2.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로서 관련 분야에 대한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자
- 중인 <u>사람</u>

- 3.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 단체를 말한다)가 추천하는 자
- 2. ----- 사람으로서

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

<u>풍부</u>한 사람

4.「건설기술관리법」에 따른 해 당 분야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

------사람 사람 으로서 회계 및 조달계약 업무에 관한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사람 4.「건설기술 진흥법」에-----

(27) 제 468 호

개 정 안 기술자격법」 등 관계법령에 따 ----- 관련 법령-----른 해당 분야의 기술자격 취득자 5.「지방재정법」제91조에 따른 5. 관계 법령에 따라 주무관청의 | 재무관 또는 분임재무관 인가를 받아 설립된 관련 분야의 협회 등 단체 또는 관련 학회에 서 추천하는 자 6. 국가기관 및 다른 지방자치단 체의 공무원으로서 해당 분야의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계약·기술 등에 대한 경험과 지 ----- 풍부한 사람 식이 있는 자 제3조(임무 및 임기) ① (생략) M3조(임무 및 임기) ① (현행과 같 음) ②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 ② 위원 중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 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 으로 한다. 원은 그 재직기간 또는 직위로 한다. 제4조(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 M4조(기능) ① -------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하동군에서 발주하는 추정가격 1.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참가자 의 자격제한에 관한 사항 50억원 이상인 공사 및 10억원 이상인 물품·용역 등의 계약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다만,

긴급한 재해복구사업,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을 조기

집행할 필요가 있는 사업은 제

(28) 제 468 호

<u>(28) 제 468 호</u>	
현 행	개 정 안
	<u>외한다.</u>
	<u>가.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참</u>
	<u>가자의 자격제한에 관한 사</u>
	<u>항</u>
	나. 계약체결 방법에 관한 사항
	다. 낙찰자 결정방법에 관한 사항
2. 계약체결 방법에 관한 사항	<u><삭 제></u>
3. 낙찰자 결정방법에 관한 사항	<u><삭 제></u>
<u>4</u> (생 략)	<u>2</u> (현행 제4호와 같음)
<u>5. 영 제25조 제4호 카목의 학술연</u>	<u><삭 제></u>
구용역계약에 관한 사항	
<u>6</u> (생 략)	<u>3</u> (현행 제6호와 같음)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u><삭 제></u>
<u>자문한다.</u>	
1. 영 제108조에서 심사대상으로	
정한 이외 사업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낙찰자 결정방법 등에 관	
<u>한 사항</u>	
2. 그 밖에 군수가 전문가의 자문	
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부의하	
<u>는 사항</u>	
제5조(회의소집 및 심의) ① 위원	제5조(회의소집 및 심의) ①
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제4조에서	
정한 사항을 <u>심의 또는 자문이</u>	<u>심의가</u>

(29) 제 468 호

현 행	개 정 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	
를 소집한다.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위원장은 <u>심의 또는 자문을</u> 함	③심의를
에 있어 <u>심사 또는 자문대상</u> 안	<u>심의</u>
건과 이해관계에 있는 위원을 <u>심</u>	<u>심의위원회</u>
<u>의 또는 자문</u> 에 참석하게 해서는	
아니 된다.	
④ (생략)	④ (현행과 같음)
제6조(소위원회) ① 위원회는 제4	제6조(소위원회) ①
조에서 정한 사항에 대한 <u>심의</u>	심의를
<u>또는 자문을</u> 효율적으로 수행하	
기 위하여 필요할 때 <u>심의 또는</u>	
<u>자문</u> 내용에 따라 영 제107조에	
따른 분야별로 소위원회를 구성·	
문영할 수 있다.	,
② ~ ⑧ (생략)	② ~ ⑧ (현행과 같음)
제7조(심의요청 등) 계약담당자는	제7조(심의요청 등)
위원회의 <u>심의 또는 자문을</u> 받고	<u>심의를</u>
자 하는 경우에는 <u>심의 또는 자</u>	심의 <u>요청서</u>
<u>문요청서</u> 에 관계 서류를 첨부하	
여 군수에게 <u>심의 또는 자문을</u>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
제8조(심의기간 및 심의결과 통지	제8조(심의기간 및 심의결과 통지
등) ① 군수는 제7조에 따른 <u>심</u>	등) ① <u>심의</u>

(30) 제 468 호

현 행	개 정 안
<u>의 또는 자문요청서</u> 를 받은 때에	요청서
는 지체 없이 이를 위원회에 부	
의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부의를	②
받은 경우에는 부의 받은 날로부	
터 15일 이내에 <u>심의 또는 자문</u>	<u>심의위원회</u>
<u>회의</u> 를 개최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장은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	
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u>심의</u>	<u>심의위원회</u>
<u>또는 자문기간</u> 을 7일 이내 1회에	<u>기간</u>
한정하여 연장할 수 있다.	<u>.</u>
③ 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u>심의 또</u>	③ 심의결과
<u>는 자문한 결과</u> 를 군수에게 통지	
하여야 한다.	,
제9조(의견청취 등) 위원회(소위원	제9조(의견청취 등)
회를 포함한다)의 위원장은 위원	
회의 <u>심의 또는 자문을</u> 위하여	<u>심의를</u>
필요할 때 현장조사를 하거나 계	
약담당자, 관계공무원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관계기관 및 관계전	
문가에게 기술검토를 의뢰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심의사항의 사후관리) ①	제10조(심의사항의 사후관리) ①

(31)제 468 호

_		(31) 제 400 모
	현 행	개 정 안
	(생략)	(현행과 같음)
	② 제8조제3항에 따른 <u>자문결과의</u>	② 심의결과
	통지를 받은 군수 또는 계약담당	
	자는 계약관련 의사결정시 이를	
	참고한다.	
	③ (생략)	③ (현행과 같음)
	제11조(위원의 위촉 해제) 군수는	제11조(위원의 위촉 해제)
	위원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임기 만료전이	
	라도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
	1. 위원이 장기간 치료가 필요한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
	<u>질병 또는 6월 이상의 해외여행</u>	<u>행할 수 없게 된 경우</u>
	등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	
	<u>운 때</u> 2. 이의 자자리가 이후 테게르	소 지묘이 자려되 비이기사이 이
	<u>2. 위원 스스로가 위촉 해제를</u> 원할 때	<u>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u> 는 경우
	전 	 3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
	지 않은 심의 또는 자문으로 계	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
	약사무 수행에 현저한 피해를 끼	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쳤다고 판단될 때	
	4. 그 밖에 품위손상 등으로 그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u>직무수행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될</u>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u>때</u>	<u>경우</u>
	제12조(주민참여 대상공사 및 상한	제12조(주민참여 대상공사 및 상한
	금액) 주민참여 감독 대상공사는	금액)
	추정가격이 3천만원 이상의 공사	

<u>(32) 제 468 호</u>

현 행	개 정 안
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로 한다. 이 경우 그	
상한금액은 별표 1에서 정하는 기	
준으로 한다.	,
1. ~ 8. (생 략)	1. ~ 8. (현행과 같음)
<u><신 설></u>	<u>9. 수해복구 공사로서 하천, 도로,</u>
	<u>상하수도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u>
	<u>관련이 있다고 군수가 판단하는</u>
	<u>공사</u>
9. (생 략)	<u>10</u> (현행 제9호와 같음)

(33) 제 468 호

하동군의회에서 의결된 「하동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16년 11월 10일

하동군수 윤상기 🗈

하동군 조례 제2184호

하동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

하동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2항 단서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토석가격을 결정할 때에는"을 "원석시가는 용도별로 구분하여 산정하고,"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감정평가기관"을 "감정평가업자"로 한다.

제3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이 경우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서 납부하도록 한다.

제3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연 4퍼센트의"를 "시중은행의 1년 만기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연 6퍼센트의"를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이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34) 제 468 호

부분 중 "연 6퍼센트"를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연 3퍼센트의"를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연 5퍼센트의"를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으로 한다.

제6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이 경우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서 납부하도록 한다.

제62조의2 중 "해당 연도 하동군 주금고의 1년 정기예금 이자율의"를 "시 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자치부장관 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으로 하고, 같은 조 단서를 삭제한 다.

제65조 후단 중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을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로, "감정평가법인"을 "감정평가업자"로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이자율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한 이자율에 대해서는 제34조제2항, 제37조, 제62조제1항, 제62조의2의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9조(토석채취료 등) ① (생 략)	제29조(토석채취료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의 원석시가란 생산지에 서 해당 원석의 세제곱미터당 반 출되는 거래시가를 말한다. <u>다만,</u> 시가적용은 생산량중에서 용도별 로 생산비율이 가장 큰 규격을 기	② 제1항의 원석시가란 생산지에 서 해당 원석의 세제곱미터당 반 출되는 거래시가를 말한다. <u><단</u> <u>서 삭제></u>
조으로 한다. ③ 제2항의 <u>토석가격을 결정할 때</u> 에는 예정가격 결정자료로서 가격 평정 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가격평정조서에는 평정의 근거가 되는 <u>감정평가기관</u> 의 감정평가서, 관련단체 및 조합 또는 실수요자의 거래시가조서, 그밖에 가격평정에 관하여 참고가 될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원석시가는 용도별로 구분하여 산정하고, ④ 감정평가업자 (⑤ (현행과 같음)

제34조(대부료등의 납기) ① (생략)

② 영 제32조제2항에 따라 대부료 를 분할납부하는 경우에는 연 4회의 범위에서 분할 납부하도록 하되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해당 연도 하동군 주금고의 1년 정기에 급 이자율의 이자를 붙여서 납부하도록 한다. 단, 이자율이 영제 32조제2항의 하한을 밑돌 경우는하한의 이자율을 적용하고, 같은하의 상한을 웃돌 경우에는 상한이자율을 적용한다.

- 1. ~ 3. (생 략)
- ③ (생략)

제37조(매각대금의 분할납부등) ① 영 제39조제1항에 따라 일반재산의 매각대금을 10년 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연 4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어느 하나와 같다.

- 1. ~ 4. (생 략)
- ② 영 제39조제1항에 따라 군이 건립한 아파트, 연립주택, 공영주택

제34조(대부료등의	납기)	1	(현행과	각
같음)				

6								
	 	 	 	 	 -	 	_	_

- 1 ~ 3 (현행과 같음)
- ③ (현행과 같음)

제37조(매각대금의 분할납부등) ① │ 제37조(매각대금의 분할납부등) ①

 	 	 	 _

----- 시중은행의

-----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 리를 고려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1. ~ 4. (현행과 같음)

② -----

및 그 부지를 국가보훈처장이 지정하는 국가유공자에게 매각하는 경우에는 일반재산의 매각대금 잔액에 연 6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10년 이내의 기간으로 분할납부하게할 수 있다.

- ③ 영 제39조제1항에 따라 일반재 산의 매각대금을 5년 이내의 기간 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u>연 6퍼센</u> 트의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④ 영 제39조제2항제5호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의 사업목적상 일 반재산이 필요한 때에는 매각대금을 20년 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연 3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 ⑤ 영 제39조제2항 제1호부터 제4 호까지 및 제6호의 규정에 해당하 는 경우에는 일반재산의 매각대금 을 20년 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

<u>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u>
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
<u>는 이자율을 적용한</u>
③
<u>시줌은행</u>
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
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자치부장관
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
<u>용한</u>
4
<u>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u>
<u>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u>
여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여 고시
<u>하는 이자율을 적용한</u>
⑤

금의 잔액에 연 5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제62조(변상금의 분할 납부) ① 영 제81조제1항에 따라 변상금을 분 할납부하는 경우에는 연 4회의 범 위에서 분할 납부하도록 하되 다 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해당 연 도 하동군 주금고의 1년 정기예금 이자율의 이자를 붙여서 납부하도 록 한다. 단, 이자율이 영 제81조제 1항의 하한을 밑돌 경우는 하한의 이자율을 적용하고, 같은 항의 상 한을 웃돌 경우에는 상한 이자율 을 적용한다.

- 1. ~ 4. (생 략)
- ② (생 략)

제62조의2(과오납금 반환가산금 이│제62조의2(과오납금 반환가산금 이 자) 법 제82조 및 영 제82조에 따 라 과오납된 공유재산의 사용료대 부료매각대금 또는 변상금을 반환 하는 경우에는 과오납된 날의 다 음 날부터 반환하는 날까지의 기 간에 대하여 해당 연도 하동군 주니 금고의 1년 정기예금 이자율의 이ㅣ

<u>시중은행의 1년 만기</u>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
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여 고
<u>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u>
세62조(변상금의 분할 납부) ①
<u>이 경우 시줌은행</u>
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
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자치부장관
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
<u>용한 이자를 붙여서 납부하도록</u>
<u>한다.</u>
1 ~ / (험해기 가요)

- 1. ∼ 4. (연맹과 슽亩/
- ② (현행과 같음)

자) --------- 시중은행의 1년 만

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자를 가산하여 반환한다. <u>단, 이자</u> <u>율이 영 제82조의 하한을 밑돌 경</u> <u>우는 하한의 이자율을 적용하고,</u> <u>같은 항의 상한을 웃돌 경우에는</u> 상한 이자율을 적용한다.

제65조(공유토지의 분할) 군수는 그소관에 속하는 공유재산 중 소유지분에 따라 분할이 가능한 공유토지가 있을 때에는 해당 토지의형상 및 이용도를 고려하여 분할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토지는분할한 후의 각 토지가액의 비율이 원래의 소유지분 비율과 같도록 분할하며 이를 위한 평가는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에 의뢰한다.

고려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 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 <단서 삭제>

제65조(공유토지의 분할)
,
<u>「감정</u>
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
<u>률」 감정평가업</u>
<u>자</u> ,

하동군의회에서 의결된 「하동군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 · 운 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16년 11월 10일 하동군수 윤상기 ①

하동군 조례 제2185호

하동군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 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하동군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음식물류 페기물 다량배출사업장"이란 「페기물관리법 시행령」제 8조의4에 따른 음식물류 페기물 배출자가 운영하는 사업장을 말한다. 다만, 「식품위생법」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식품접객업의 경우에는 같은 법 제37조제4항에 따라 신고한 영업장 면적이 250제곱미터 이상 인 휴게음식점 및 일반음식점을 말한다.

제16조제1호 후단을 삭제한다

제18조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항에 따라"로, "고려하여 2 개월의 범위 내에서 개선기간을 주어야 하며, 개선기간이 끝나는 즉시"를 "고려하여"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혂 햇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 제2조(정의) ----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 · 2 (생 략)
- 3.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 | 사업장"(이하 "다량배출사업 장"이라 한다)이란 「폐기물 관리법 시행령」(이하 "시행 령"이라 한다) 제8조의4에서 정한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 가 운영하는 사업장을 말한다.

4. ~ 7. (생 략)

제16조(다량배출사업장의 준수사 |제16조(다량배출사업장의 준수사 항) 다량배출사업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제15조제1호에 의해 위탁하 여 재활용하고자 하는 경우 위탁 10일전까지 군수에게 위 탁계약서 등 관련서류의 사본 을 제출하여야 한다. 계약서 |

- 1. · 2. (현행과 같음)
- 3. "음식물류 페기물 다량배출 사업장"이란 「페기물관리법 시행령」제8조의4에 따른 음 식물류 폐기물 배출자가 운영 하는 사업장을 말한다. 다만, 「식품위생법」제36조제1항 제3호에 따른 식품접객업의 경우에는 같은 법 제37조제4 항에 따라 신고한 영업장 면 적이 250제곱미터 이상인 휴 게음식점 및 일반음식점을 말 한다.

4. ~ 7. (현행과 같음)

항) -----

 제15조제1호에 의해 위탁하 여 재활용하고자 하는 경우 위탁 10일전까지 군수에게 위 탁계약서 등 관련서류의 사본 을 제출하여야 한다. <후단

작성 시 배출량에 비례하여 수수료를 부과하는 내용을 명 시하여야 한다.

2 (생 략)

제18조(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 제18조(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 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을 위 한 조치) ① (생 략)

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 여 과태료를 부과한 경우 개선 하여야 할 사항을 고려하여 2개 월의 범위 내에서 개선기간을 주어야 하며, 개선기간이 끝나 는 즉시 개선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다.

③ · ④ (생 략)

삭제>

2. (현행과 같음)

제, 수집·문반 및 재활용을 위 한 조치) ① (현행과 같음)

2	 <u>제1항에</u>	<u>따라</u>	

 고려하여	
꾸다이어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③ · ④ (현행과 같음)

하동군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의결된 「하동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시행 규칙」 일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2016년 11월 10일

하동군수 윤상기입

하동군 규칙 제1154호

하동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하동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시행규칙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44) 제 468 호

				컨스	·기관	사	법소			
구분	기관별 직급별	합계	본청	보건소	농 업 기술센터	체육/설 사업소	상하수도 사업소	의 회 사무과	윱	면
	총계	644	287	68	51	9	23	13	<u>22</u>	<u>171</u>
청무	청무직 계	1	1					5		
37	청무칙	1	1							
	일반적 계	613	283	68	26	9	23	11	22	<u>171</u>
	4급 소계	1	1							
	서기관	1	1	8 8				8		
	4~5급소계	3	2	1					-	
	 서기관·행청사무관	1	1						,	
	서기관·행청·시설사무관	1	1						-	
	기술서기관 보건사무관 . 간호사무관 . 의료기술사무관	1		1						
	5급 소계	34	12	1	4	1	1	2	1	12
	행정	3	2					1		
	의무	1		1						
	시설	1	1	8 8				8		
102.52	행청·사회복지	1	1							
일	행정 사회복지 시설	1	1							
	행정·농업	5	1							4
반	행정 사회복지 농업	1		Ser .			,			1
.00.02	행정 시설	4	3			1				
	행청·해양수산	1	1							
칙	행정·농업·녹지	2	1				Y		j v	1
	행정 농업 녹지 시설	1								1
	행정 농업 수의 지도관	1			1		(
	행정 농업 시설	1		ē :				1		
	행정.사회복지.농업.녹지	1		8 8						1
	행정 농업 시설 해양수산	1								1
	행청·해양수산·시설	1								1
	행정 환경	1	1		i i					
	행정:사회복지 농업:시설	2	_						1	1
	행정:사회복지 농업 보건	1			-				-	1
	행청 공업 환경 시설	1		2 0			1			*
	행정 농업 지도관	1		ē :	1			8		
	농업 지도관	2			2		4		-	

(45) 제 468 호

_	기관별			칙선	누기관	사 9	법 소	의 회	_	-
구분	지급별 기단 열	합계	본청	보건소	농 업 기술센터	체육시설 사업소	상하수도 사업소	사무과	윱	면
	6급 소계	158	80	12	7	2	3	3	7	44
	행청	13	12	1						
	세무	1	1							
	속기	1						1		
	녹지	1	1							
	해양수산	1	1							
	보건진료	5		5						
	환경	2	2							
	시설	7	7							
	운천	4	2					1	1	
	행청 세무	12	5						1	6
	핵청·사회복지	5	5							
	행청.공업	1			1					
	행정 농업	28	9		3			1	1	14
	행정 녹지	3								3
	행정 환경	2	2							
	행청 시설	14	13							1
일	전산·방송통신	1	1							
_	농업 녹지	3	2		1					
	농업 수의	1			1					
반	행청·사회복지·농업	4								4
	행청·사회복지·시설	2							1	1
→ 1	행청·세무·농업	4	2		0					2
칙	행청·세무·시설	3	2						1	
	행청·세무·천산	1	1							
	행청·천산·농업	3	2						1	
	행청·천산·시설	2	1							1
	공업·환경·보건	1					1			
	행청·광업·시설	5	3			1				1
	행청 농업 녹지	3	1		1					1
	행청 농업 수의	1								1
	행청 농업 시설	4				1				3
	행청·해양수산·시설	2	1							1
	행정·보건·간호	4		3						1
	행청·시설·환경	2	1							1
	행청·해양수산·보건	1								1
	보건·의료기술·간호	2		2						
	행청 공업 환경 시설	4	2				2			
	행정 농업 녹지 환경	2	1							1
	행청·보건·간호·의료기술	1		1						
	사무운영	2							1	1

(46) 제 468 호

	41-11-11			[작	속기관	사 약	ቪ소	01 =1		
구분	기관별 직급별	합계	본청	보건소	~ 어	체육시설 사업소	상하수도 사업소	의 사무과	괍	면
	7급 소계	182	82	19	7	3	5	4	9	53
	행청	22	15			1		3	1	2
	세무	2	2							
	전산	2	2							
									-	
	사회복지	<u>10</u>	2						1	7
	속기	1						1		
	공업	3	2				1			
	농업	1			1					
	녹지	2	2							
	해양수산	4	4							
	시설	15	8				2		1	4
	의료기술	4		4						
	보건	2		2						
	보건진료	6		6						
	환경	2	2						_	
	운천	11	2	2					2	5
	행정:세무	5	3							2
ll <u>.</u> ,	행청·사회복지 행청·공업	5 3	4 2		1					1
일	행정·농업	18	5	-	١ .				2	11
	행정 시설	15	10			1				4
J1.	행정 환경	1	1			_ ^				-
반	행정·방송통신	1								1
	공업·환경	1	1							
췩	농업·농촌지도사	2			2					
~	농업·수의	2			2					
	보건·약무	1		1						
	보건 환경	1		1						
	행정·세무·농업	3	1							2
	행정:세무:시설	3	1							2
	행정 전산 농업 행정 전산 시설	3	2							1
		1 3	1 2							1
	행정 농업 녹지 행정 농업 농촌지도사	1		-	1					
	행정 농업 보건	1								1
	행정 농업 시설	10	7							3
	행정 농업 해양수산	1								1
	행정 농업 환경	2								2
	행정·환경·시설	2	1							1
	행청·공업·시설	1				1				
	행정·보건·환경	2							1	1
	보건긴호의료기술식품위생	3		3						
	행정 공업 보건 환경	2					1			1
	통신운영	1							1	
	사무운영	1					1			
		=			I .	l .				

(47) 제 468 호

	기관별			격설	·기관	사	<u></u>	의 회		
구분	착급별	합계	본청	보건소	농 업 기술센터	체육시설 사업소	상하수도 사업소	의 회 사무과	윱	면
	8급 소계	147	63	33	4	2		2	3	40
	행청	15	8					2		5
	세무	1	1							
	사회복지	6	2						1	3
	방호	1			1					
	공업	2	1		1					
	해양수산	2	2							
	보건	10		10						
	간호	1		1						
	의료기술	9		9						
	보건진료	5		5						
	식품위생	1		1						
	환경	1	1							
01	시설	9	5							4
밀	시설관리	3	3							
	운천	7	1		1					5
반	행청·세무	4	4							
	행청·사회복지·시설	7	2						1	4
췩	행청·전산	3	3							
	행청·농업	13	5		1					7
	행청·해양수산·시설	5	3							2
	행청·시설	4	3			1				
	전산·방송통신	2	2							
	공업·환경	2	2							
	농업·녹지	4	4							
	행청·보건·간호	4		4						
	약무·보건	1		1						
	행정·세무·농업	8	2							6
	행청·농업·시설	6	4							2
	행정·보건·환경	3							1	2
	행청·공엽·시설	5	4			1				
	보건·간호·의료	2		2						
	사무운영	1	1							

(48) 제 468 호

	구분 작급별		u -1	칙론	·기관	사	겉소	의 회		_1
十 卷	지급별	합계	본청	보건소	농 업 기술센터	체육시설 사업소	접소 상하수도사 업소	사무과	압	면
	9급 소계	88	<u>43</u>	2	4	1	14		2	22
	행청	8	7				1			
	사회복지	17	<u>6</u>						1	10
	환경	2	2							
	공업 시설관리	7					7			
	해양수산	1	1							
	보건	4					4			
	운천	3	1							2
	행청·세무	4	4							
	행정:사회복지	6	2						1	3
일	행청·농업	3	1							2
	행청·시설	13	12			1				
반	농업·녹지	2	2							
	농업·수의	4			4					
칙	보건·간호	1		1						
	행청·세무·농업	1								1
	행청·공업	1	1							
	핵청·세무·시설	1	1							
	행정 사회복지 농업	1								1
	행청·농업·녹지	3	1							2
	행정·환경·시설	2	1							1
	보건 의료기술 간호	1		1						
	천기운영	1	1							
	기계운영	1					1			
	화공운영	1					1			

하 동 군 공 보

(49) 제 468 호

	기관별			격속	녹기관	상하수도	의 회	_	_
구분	기관별 작급별	합계	본청	보건소	농 업 기술센터	사업소	사무화	숍	면
	별청직 계	3	1				2		
	5급 상당 소계	1					1		
별 청	행청·별정	1					1		
⁷⁸ 취	6급 상당 소계	2	1				1		
	비서	1	1						
	의회전문위원	1					1		
연	연구칙 계	2	2						
쿠	학예연구사	1	1						
칙	기록연구사	1	1						
치	지도직 계	25			25				
도 칙	<u> </u>	25			25				

신·구조문 대비표

				직속:	기관	사업	소								직속:	기관	사업:	소			Г
구분	기관별		본청	보 건 소	농업기술센터	체육시설사업소	상하수도사업소	의회사무과	윱	면	구분	기관별	합계	본청	보 건 소	농업기술센터	체육시설사업소	상하수도사업소	의희사무과	윱	,
	考 계	644	288	68	51	9	23	13	21	171		총계	644	287	68	51	9	23	13	<u>22</u>	1
정무.	정무직 계	1	1								정무		1	1							
	정무직	1	1						_	484		정무직	1	1							L
	일반직 계	613	284	68	26	9	23	11	21	171		일반직 계	613	283	68	26	9	23	11	<u>22</u>	
	4급 소계	1	1									4급 소계	1	1							L
	서기관	1	1									서기관	1	1							ŀ
	4~5급소계	3	2	1								4~5급소계	3	2	1						L
	서기관·행정사무관	1	1									서기관·행정사무관	1	1							L
	서기관·행정·시설사무관 기숙서기관·보건사무관	1	1									서기관·행정·시설사무관 기숙서기관·보건사무관	1	1							F
	기술서기관·보건사무관 간호사무관의료기술사무관	1		1								기술서기관·보건사무관 간호사무관·의료기술사무관	1		1						ŀ
	5급 소계	34	12	1	4	1	1	2	1	12		5급 소계	34	12	1	4	1	1	2	1	L
	행정 	3	2					1				행정	3	2					1		L
	의무 	1		1								의무	1		1						
	시설	1	1									시설	1	1							
	행정·사회복지	1	1									행정·사회복지	1	1							
	행정·사회복지·시설	1	1									행정·사회복지·시설	1	1							
일	행정·농업	5	1							4	일	행정·농업	5	1							
นา	행정·사회복지·농업	1								1	นใ	행정·사회복지·농업	1								
반	행정·시설	4	3			1					반	행정·시설	4	3			1				
직	행정·해양수산	1	1								직	행정·해양수산	1	1							
	행정·농업·녹지	2	1							1		행정·농업·녹지	2	1							
	행정·농업·녹지·시설	1								1		행정·농업·녹지·시설	1								
	행정·농업·수의·지도관	1			1							행정·농업·수의·지도관	1			1					
	행정·농업·시설	1						1				행정·농업·시설	1						1		f
	행정·사회복지·농업·녹지	1								1		행정·사회복지·농업·녹지	1								t
	행정·농업·시설·해양수산	1								1		행정·농업·시설·해양수산	1								t
	행정·해양수산·시설	1								1		행정·해양수산·시설	1								f
	행정·환경	1	1									행정·환경	1	1							
	행정·사회복지·농업·시설	2							1	1		행정·사회복지·농업·시설	2							1	H
	행정·사회복지·농업·보건	1								1		행정·사회복지·농업·보건	1								f
	행정·공업·환경·시설	1					1					행정·공업·환경·시설	1					1			H
	행정·농업·지도관	1			1							행정·농업·지도관	1			1					H
	농업·지도관	2			2							농업·지도관	2			2					H

	्र 	<u>현</u>			행							,	개	정		안					
																					_
				직설	i기관	사 '	검소	ol							직선	추기관	사	검소	ol		
구분	기관별	합계	본청	보 건 소	농업기술센터	체육시설사업소	상하수도사업소	기회 사 무 과	유	면	구분 - 구분	기관별 직급별	합계	본청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체육시설사업소	상하수도사업소	기회 사무 과	음	
	6급 소계	158	80	12	7	2	3	3	7	44		6급 소계	158	80	12	7	2	3	3	7	
	행정	13	12	1								행정	13	12	1						T
ĺ	세무	1	1									세무	1	1							T
	속기	1						1				속기	1						1		T
	녹지	1	1									녹지	1	1							T
	해양수산	1	1									해양수산	1	1							T
	보건진료	5		5								보건진료	5		5						T
	환경	2	2									환경	2	2							1
	시설	7	7									시설	7	7							Ť
	운전	4	2					1	1			운전	4	2					1	1	†
	행정·세무	12	5						1	6		행정·세무	12	5						1	1
	행정·사회복지	5	5									행정·사회복지	5	5							1
	행정·공업	1			1							행정·공업	1			1					†
	행정·농업	28	9		3			1	1	14		행정·농업	28	9		3			1	1	1
	행정·녹지	3								3		행정·녹지	3								-
	행정·환경	2	2									행정·환경	2	2							1
	행정·시설	14	13							1		행정·시설	14	13							+
	전산 방송통신	1	1							_		전산·방송통신	1	1							1
일	농업·녹지	3	2		1						일	농업·녹지	3	2		1					-
_	농업·수의	1	_		1							농업·수의	1	_		1					+
반	행정·사회복지·농업	4			-					4	반	행정·사회복지·농업	4								-
	행정·사회복지·시설	2							1	1		행정·사회복지·시설	2							1	_
직	행정·세무·농업	4	<u> </u>		0				1		직		4	2		0				1	_
	행정·세무·시설	3	2		0				1	2		행정·세무·농업 행정·세무·시설	3	2		0				1	-
	행정·세무·전산		2						1			행정·세무·전산								1	_
		1	1						-1				1	1						-1	_
	행정·전산·농업	3	2						1			행정·전산·농업	3	2						1	_
	행정·전산·시설	2	1							1		행정·전산·시설	2	1				_			-
	공업·환경·보건	1					1					공업·환경·보건	1				_	1			_
	행정·공업·시설	5	3			1				1		행정·공업·시설	5	3		_	1				_
	행정·농업·녹지	3	1		1					1		행정·농업·녹지	3	1		1					_
	행정·농업·수의	1								1		행정·농업·수의	1								_
	행정·농업·시설	4				1				3		행정·농업·시설	4				1				_
	행정·해양수산·시설	2	1							1		행정·해양수산·시설	2	1				_			4
	행정·보건·간호	4		3						1		행정·보건·간호	4		3						4
	행정·시설·환경	2	1							1		행정·시설·환경	2	1							4
	행정·해양수산·보건	1								1		행정·해양수산·보건	1								4
	보건·의료기술·간호	2		2								보건·의료기술·간호	2		2						
	행정·공업·환경·시설	4	2				2			Ш		행정·공업·환경·시설	4	2				2			
	행정·농업·녹지·환경	2	1							1		행정·농업·녹지·환경	2	1							
	행정·보건·간호·의료기술 사무운영	2		1					1	1		행정·보건·간호·의료기술 사무운영	1 2		1					1	4

	현				행							개		정		안					
				직속	·기관	사	검소								직속	기관	사	검소			Τ
구분	기관별	합계	본청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체육시설사업소	상하수도사업소	의회사무과	4	면	구분	기관별	합계	본청	보 건 소	농엄기술센터	체육시설사업소	상하수도사업소	의회사무과	욥	면
	7급 소계	182	82	19	7	3	5	4	9	53		7급 소계	182	82	19	7	3	5	4	9	53
	행정	22	15			1		3	1	2		행정	22	15			1		3	1	2
	세무	2	2									세무	2	2							
	전산	2	2									전산	2	2							
	사회복지	8	2						1	5		사회복지	<u>10</u>	2						1	<u>7</u>
	속기	1						1				속기	1						1		
	공업	3	2				1					공업	3	2				1			
	농업	1			1							농업	1			1					
	녹지	2	2									녹지	2	2							
	해양수산	4	4									해양수산	4	4							
	시설	15	8				2		1	4		시설	15	8				2		1	4
	의료기술	4		4								의료기술	4		4						
	보건	2		2								보건	2		2						
	보건진료	6		6								보건진료	6		6						
	환경	2	2									환경	2	2							
	운전	11	2	2					2	5		운전	11	2	2					2	5
	행정·세무	5	3							2		행정·세무	5	3							2
	행정·사회복지	5	4							1		행정·사회복지	5	4							1
	행정·공업	3	2		1							행정·공업	3	2		1					
	행정·농업	18	5						2	11		행정·농업	18	5						2	11
	행정·시설	15	10			1				4		행정·시설	15	10			1				4
	행정·환경	1	1								.,	행정·환경	1	1							
일	행정·방송통신	1								1	일	행정·방송통신	1								1
- 12	공업·환경	1	1									공업·환경	1	1							
반	농업·농촌지도사	2			2						반	농업·농촌지도사	2			2					
→1	농업·수의	2			2						71	농업·수의	2			2					
직	보건·약무	1		1							직	보건·약무	1		1						
	보건·환경	1		1								보건·환경	1		1						\top
	행정·세무·농업	3	1							2		행정·세무·농업	3	1							2
	행정·세무·시설	3	1							2		행정·세무·시설	3	1							2
	행정·전산·농업	3	2							1		행정·전산·농업	3	2							1
		1								1		행정·전산·시설									+
	행정·전산·시설		1										1	1							-
	행정·농업·녹지	3	2							1		행정·농업·녹지	3	2							1
	행정·농업·농촌지도사	1			1							행정·농업·농촌지도사	1			1					
	행정·농업·보건	1								1		행정·농업·보건	1								1
	행정·농업·시설	10	7							3		행정·농업·시설	10	7							3
	행정·농업·해양수산	1								1		행정·농업·해양수산	1								1
	행정·농업·환경	2								2		행정·농업·환경	2								2
	행정·환경·시설	2	1							1		행정·환경·시설	2	1							1
	행정·공업·시설	1				1						행정·공업·시설	1				1				T
	행정·보건·환경	2							1	1		행정·보건·환경	2							1	1
	보건·간호·의료기술·식 품위생	3		3								보건·간호·의료기술·식 품위생	3		3						
	행정·공업·보건·환경	2					1			1		행정·공업·보건·환경	2					1			1
	통신운영	1							1			통신운영	1							1	
	사무운영	3					1			2		사무운영	1					1			

	ī	현 			행								개	정		안					
				직속:	기관	사	검소	۵۱							직속:	기관	사	검소	۵۱		
구분	기관별	합계	본청	보 건 소	농업기술센터	체육 시설 사업 소	상하 수도 사업 소	의회사무과	숇	면	구분	기관별	합계	본청	보 건 소	농업기술센터	체육 시설 사업 소	상하 수도 사업 소	의회사무과	윱	면
	8급 소계	147	63	33	4	2		2	3	40		8급 소계	147	63	33	4	2		2	3	40
	행정	15	8					2		5		행정	15	8					2		5
	세무	1	1									세무	1	1							
	사회복지	6	2						1	3		사회복지	6	2						1	3
	방호	1			1							방호	1			1					
	공업	2	1		1							공업	2	1		1					
	해양수산	2	2									해양수산	2	2							
	보건	10		10								보건	10		10						
	간호	1		1								간호	1		1						
	의료기술	9		9								의료기술	9		9						
	보건진료	5		5								보건진료	5		5						
	식품위생	1		1								식품위생	1		1						
	환경	1	1									환경	1	1							
	시설	9	5							4		시설	9	5							4
	시설관리	3	3									시설관리	3	3							
일	운전	7	1		1					5	일	운전	7	1		1					5
	행정·세무	4	4									행정·세무	4	4							
반	행정·사회복지·시설	7	2						1	4	반	행정·사회복지·시설	7	2						1	4
직	행정·전산	3	3								직	행정·전산	3	3							
	행정·농업	13	5		1					7		행정·농업	13	5		1					7
	행정·해양수산·시설	5	3							2		행정·해양수산·시설	5	3							2
	행정·시설	4	3			1						행정·시설	4	3			1				
	전산·방송통신	2	2									전산·방송통신	2	2							
	공업·환경	2	2									공업·환경	2	2							
	농업·녹지	4	4									농업·녹지	4	4							
	행정·보건·간호	4		4								행정·보건·간호	4		4						
	약무·보건	1		1								약무·보건	1		1						
	행정·세무·농업	8	2							6		행정·세무·농업	8	2							6
	행정·농업·시설	6	4							2		행정·농업·시설	6	4							2
	행정·보건·환경	3							1	2		행정·보건·환경	3							1	2
	행정·공업·시설	5	4			1						행정·공업·시설	5	4			1				
	보건·간호·의료	2		2								보건·간호·의료	2		2						
	사무운영	1	1									사무운영	1	1							

	र्ले]			행							ブ	H	정		안					
				직속	기관	사'	겉소								직속	기관	사	검소			
구분	기관별	합계	본청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체육 시설 사업 소	상하수도사업소	의회사무과	유	면	구분	기관별	합계	본청	보 건 소	농업기술센터	체육 시설 사업 소	상하수도사업소	의 의사무과	유	면
	9급 소계	88	44	2	4	1	14		1	22		9급 소계	88	<u>43</u>	2	4	1	14		2	22
	행정	8	7				1					행정	8	7				1			
	사회복지	17	7							10		사회복지	17	<u>6</u>						1	10
	환경	2	2									환경	2	2							
	공업·시설관리	7					7					공업·시설관리	7					7			
	해양수산	1	1									해양수산	1	1							
	보건	4					4					보건	4					4			
	운전	3	1							2		운전	3	1							2
	행정·세무	4	4									행정·세무	4	4							
	행정·사회복지	6	2						1	3		행정·사회복지	6	2						1	3
	행정·농업	3	1							2		행정·농업	3	1							2
일	행정·시설	13	12			1					일	행정·시설	13	12			1				
반	농업·녹지	2	2								반	농업·녹지	2	2							
직	농업·수의	4			4						직	농업·수의	4			4					
	보건·간호	1		1								보건·간호	1		1						
	행정·세무·농업	1								1		행정·세무·농업	1								1
	행정·공업	1	1									행정·공업	1	1							
	행정·세무·시설	1	1									행정·세무·시설	1	1							
	행정·사회복지·농업	1								1		행정·사회복지·농업	1								1
	행정·농업·녹지	3	1							2		행정·농업·녹지	3	1							2
	행정·환경·시설	2	1							1		행정·환경·시설	2	1							1
	보건·의료기술·간호	1		1								보건·의료기술·간호	1		1						
	전기운영	1	1									전기운영	1	1							
	기계운영	1					1					기계운영	1					1			
	화공운영	1					1					화공운영	1					1			

■ 도로법 시행규칙 [별지 제36호서식]

하동군 고시 제2016-141호

_[√] 통행의 금지·제한 _ _[√] 차량의 운행 제한 _

「도로법」 제76조제1항ㆍ제2항, 제77조제1항ㆍ제7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

제40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은 이유로 그 -[√] 통행의 금지·제한 을 공고합니다. -[√] 차량의 운행 제한

2016년 10월 26일

하 동 군 수

도로의 종류	지방도1047호선(미개통구간)	노선명	청암면(회남재)~삼성궁
금지 또는 제한의 대상	모든 종류의 차량 및 건설 기계(이륜차 포함)	구간	삼성궁입구~회남재(6km)
기간	2016년 10월 29일부터 201	6년 11월	13일까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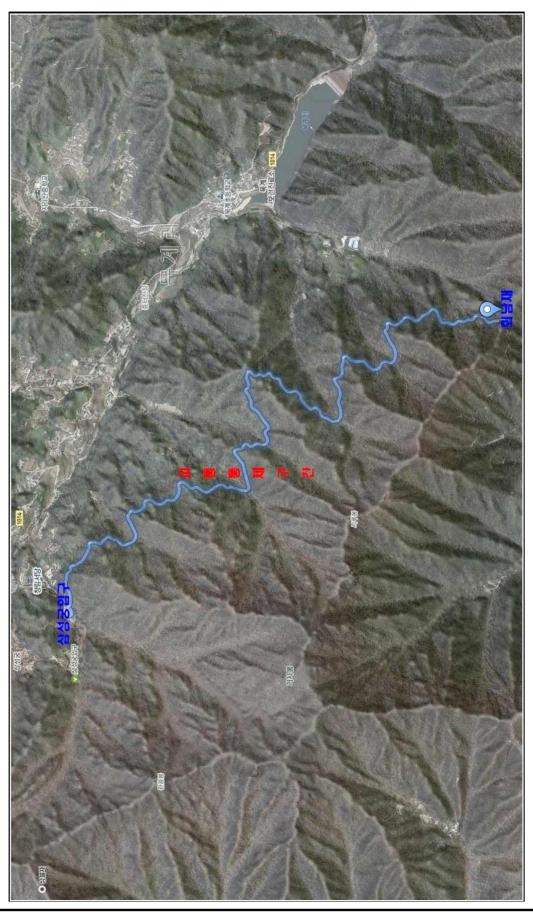
이유

가을 단풍 행락철 등산객 급증에 따른 교통체증과 혼잡을 해소하고, 차량 운행으로 인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함.

그 밖의 사항

첨부서류: 교통제한 구간 지형도

교통제한 구간 지형도



하동군 고시 제2016-142호

도로명주소 부여고시(208차)

우리군 신축 건물 및 도로명주소 미부여 건물에 대한 도로명주소 신규 부여사 항이 있어 「도로명주소법」 제1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4조에 따라 새로이 부 여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 10. 28.

하동군수

○ 도로명주소 : 경상남도 하동군 화개면 부춘길 463 외 9건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 고시일	도로명 부여사유	비고
	별 지	참 조(10건)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하동군청 민원과(☎880-2124)에 문의 또는 도로명주소 안내 홈페이지 (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O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는 2016. 10. 28.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의거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되며, 2014년 1월 1일부터는 공공기관에서 민원신청이나 서류를 제출할 때 새롭게 바뀐 도로명주소를 사용해야 합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 도로명주소 변경 등

-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변경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의3 및 제9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제7항에 의거 당해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 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참고사항

-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주소의 공동주택명, 동·호와 도로명주소의 상세주소는 공법관계의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합니다.

하 동 군 공 보

(58) 제 468 호

업무구분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주 소고시일	도로명 고시일	도로명부여시유	비고
건물번호 부여	경상남도 하동군 악양면 정동리 68-5	경상남도 하동군 악양면 부계2길 71-6	20161028	20070618	오리가 많이 살았던 골짜기에서 유래된 자연마을명에 일련번호 방식의 두번째 도로명 반영	
건물번호 부여	경상남도 하동군 악양면 입석리 180	경상남도 하동군 악양면 악양서로 234	20161028	20070618	도로시점이 악양 중심으로부터 서쪽에 위치하는 방향성 부여	
건물번호 부여	경상남도 하동군 화개면 부춘리 39	경상남도 하동군 화개면 부춘길 463	20161028	20070618	부춘이라는 자연마을이름 반영	
건물번호 부여	경상남도 하동군 악양면 입석리 199-1	경상남도 하동군 악양면 입석길 26	20161028	20070618	선돌이 있어 입석이 되어 버린 법정리명을 도로명에 반영	
건물번호 부여	경상남도 하동군 적량면 관리 279-3	경상남도 하동군 적량면 금강길 53	20161028	20070618	마을 앞에 흐르는 우계천의 물이 비단같이 아름다워 붙여진 자연마을이름 반영	
건물번호 부여	경상남도 하동군 악양면 등촌리 592	경상남도 하동군 악양면 덕기길 33	20161028	20070618	덕기라는 자연마을이름 반영	
건물번호 부여	경상남도 하동군 양보면 운암리 26-7, 26-10	경상남도 하동군 양보면 상고개로 9	20161028	20070618	양보면 박달리에서 진교면 월운리 경계에 있는 재 이름에서 도로명 부여	
건물번호 부여	경상남도 하동군 옥종면 병천리 429-9	경상남도 하동군 옥종면 덕천로 102-92	20161028	20070618	도로구간이 덕천강을 따라 이어지고 있어 강 이름에서 도로명부여	
건물번호 부여	경상남도 하동군 악양면 중대리 447-3	경상남도 하동군 악양면 상중대1길 8-2	20161028	20090302	중대리 윗쪽에 있는 마을이라 하여 붙여진 자연마을명에 일련번호방식의 첫번째 도로명 반영	
건물번호 폐지	경상남도 하동군 옥종면 궁항길 99-64		20161028	20090302	궁항리 법정리명을 도로명에 반영	

하동군 고시 제2016-144호

하천공사 시행계획 고시

하천법 제27조 제3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6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하천공사 시행계획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11월 10일

하 동 군 수

1. 하천공사시행계획 : 명칭, 위치, 목적 및 개요, 착·준공예정일

구	명 칭	하천명	위		치	목 적	공사개요	공 사	비
분	0 0	1 6 0	시군	읍면	동리	' '	0 1/11-	기 간	고
사 업 명	섬진강 (신기지구) 모래톱 준설공사	섬진강	하동	ᅌᆸ	비파	모래톱을 준설로 하천재해 예방 및 어민소득 증대기여	하천준설 V=13,949㎡ 송림백사장복원 V=13,949㎡	'16. 11. 10 ~ '16. 12. 31	

2.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 명칭 : 하 동 군 수

└ 주소 : 경남 하동군 하동읍 군청로 23

- 3. 수용 또는 사용하고자 하는 물건 및 권리에 관한 명세 : 해당없음
- 4. 사업비 및 자금조달 계획 : 국가하천유지관리사업비 120백만원
 - ※ 관계도면은 하동군(안전총괄과)에 비치하고 있으니 이해관계인은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하동군 공고 제2016-1031호

하동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하동군 건축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하동군 법무행정 처리 규정」 제7조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 이 공고합니다.

2016년 10월 20일

하 동 군 수

- 1. 자치 법규명 : 하동군 건축 조례
- 2. 제안이유 : 상위 법령의 개정에 따라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 및 현행 조례운영상 나타난 미비점 및 불합리한 지방규 제 정비 보완하기 위함.
- 3. 주요 내용
 - 가. 건축공사현장 안전관리예치금 대상 면적 개정(안 제15조)
 - 나. 소규모 건축물 감리비용에 관한 기준 신설(안 제19조의3)
 - 다. 소규모건축물 유지관리 기술 지원을 위한 주택관리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규정 신설(안 제20조의2)
 - 라. 적용의 완화규정 중
 - 건축법 제58조 및 건축법 시행령 제80조의2(대지 안의 공지)에 따라 50제곱미터 이하 부속건축물의 인접대지 띄우는 거리 완화 개정(안 제25조 별표 3)
 - 건축법 시행령 제115조의3(이행강제금의 탄력적 운영)의 규정에

의거 부과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하는 건축물 신설(안 제31 조 제2항)

- 건축법 제80조의2(이행강제금 부과에 관한 특례)의 규정에 의 거 부과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하는 건축물 신설(안 제31조의2)
- 4. 의견 제출 : 이 자치 법규의 입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개인은 2016년 11월 9일까지 하동군(참조 : 도시건축과, 전화 055-880-2132, FAX 055-880-2109, pykstar@korea.kr)에 게 【별지 서식】에 따라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지서식】 가.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 붙임 1. 하동군 조례(규칙) 일부개정조례(규칙)안(별표, 별지서식 포함)
 - 2. 신구조문대비표. 관련법령 등

(62) 제 468 호	하 동 군 공 보			
【별지】				
입법예고	사항에 대	한 9	의 견서	
□ 자치법규명 :				
○ 성명(단체명) :				
○ 주 소:				
○ 전 화 번 호 :				
조례(규칙)안 내용	Ğ	리	견	비고

(63) 제 468 호

조례 제 호

하동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하동군 건축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 중 "5천제곱미터"를 "1천제곱미터"로 한다.

제1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영 제15조제5항제15호"를 "영 제15조제5항제16호"로 한다.

제19조제1항제2호 중 "한한정다"를 "한 한다"로 한다.

제3장에 제19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19조의3(소규모 건축물 감리비용에 관한 기준 등) ① 법 제25조제12항에 따라 허가권자가 공사감리자를 지정하는 소규모 건축물 중 비상주감리의 감리비용에 관한 기준은 「건축사법」제19조의3에 따른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 「별표 5」 '건축공사감리 대가요율'의 100분의 70으로 하고, 영 제 19조제5항에 따른 상주감리의 감리비용에 관한 기준은 같은 기준 제14조제2항에 따라 실비정액가산식으로 하며, 건축주는 공사감리자와의 계약시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감리비용 산출 시 공사비는 해당 건축공사의 공사내역서 또는 건물신축단가표(한국감정원)의 용도별 평균값을 적용한다.
 - ③ 제1항에 따른 감리비용 산출시 건축물의 종별 구분은 같은 기준의 [별표 3] '건축물의 종별 구분'에 따른다.
 - ④ 제2항에 따라 산출한 공사비가 [별표 5]에서 규정한 공사비의 중간에 있는 경우에는 직선보간법에 따라서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64) 제 468 호

$$Y = y1 - \frac{(X - x2)(y1 - y2)}{x1 - x2}$$

X : 당해금액 x1 : 큰 금액 x2 : 작은금액

Y: 당해공사비 요율 y1: 작은금액 요율 y2: 큰금액 요율

⑤ 건축주와 공사감리자는 제1항에 따라 산정된 건축공사 감리비의 10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가중하거나 감경 할 수 있다.

⑥ 허가권자는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허가권자가 공사감리자를 지정하는 건축물의 건축주가 사용승인을 신청할 때에는 감리비용을 지불한 입금내역서, 세금계산서, 통장사본 등을 제출하도록 요구하여 적정한 감리비용이 지불되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2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0조의2(주택관리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① 법 제35조의2제2항 및 영 제23조의8의 규정에 의거 군수는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주택법」제43조제1항에 따른 관리주체 등이 관리하는 공동주택은 제외한다)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기술지원 및 정보제공 등을 위하여 주택관리지원센터를 설치 및 운영할 수 있다.

- ② 주택관리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전문가 10명 이내로 구성하며, 센터장은 건축부서의 부서장으로 한다.
 - 1. 건축 · 주택업무 담당 공무원
 - 2. 건축사 또는 건축분야 기술사
 - 3. 하동군 건축위원회 위원 중 분야별 전문가
 - 4.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관련 기사 자격증이 있는 사람으로서 건축분야에서 3년 이상 실무 경력이 있는 사람
- ③ 영 제23조의8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한 자에게

(65) 제 468 호

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업무와 직접 관련된 공무원은 제외한다.

제31조 중 "제4항"을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② 영 제115조의3제1항 단서에 따라 정하는 비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위반사항이 두 가지 이상일 경우에는 그 중 높은 비율을 적용한다.
 - 1. 건폐율을 초과하여 건축한 경우: 100분의 60
 - 2. 용적율을 초과하여 건축한 경우 : 100분의 60
 - 3.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한 경우: 100분의 70
 - 4.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한 경우 : 100분의 60

제3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31조의2(이행강제금 부과에 관한 특례) ① 법 제80조의2제1항 단서에서 지방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간은 최초의 시정명령이 있었던 날부터 2년으로 한다.
 - ② 영 제115조의4제1항제7호에 따라 건축조례로 정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이행강제금의 부과 · 징수 대상자가 위반사항을 자진 신고한 경우
 - 2. 허가(신고를 포함한다)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한 건축물의 허가를 추인 받고자 하는 경우(허가를 추인할 수 있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 3. 이행강제금의 부과·징수 대상자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 급여수급자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에 해당하는 경우
 - 4. 천재지변이나 재해 등으로 건축물 멸실 후 허가(신고를 포함한다)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물을 건축한 경우

(66) 제 468 호

- 5. 법 제20조제3항을 위반한 경우
- ③ 영 제115조의4제2항제2호에 따라 건축조례로 정하는 비율은 100분의 50으로 한다.

별표 3 중 비고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처분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한 처분은 이 조례 에 의한 처분으로 본다.
- 제3조(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건축허가를 신청한 것과 건축을 위한 신고를 한 것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종전의 규 정이 개정규정에 비하여 건축주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규정에 따른다.

<개정안>

별표 3

대지안의 공지기준(제25조 관련)

1. 건축선으로부터 건축물까지 띄어야 하는 거리

(복합용도일 경우 강화기준으로 적용하며 지구단위계획 수립지역 내에는 지구 단위계획에 따른다.)

(67)제 468 호

대상 건축물	건축조례에서 정하는 건축기준
가. 당해 용도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공장(전용공업지역 및 일 반공업지역 또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에서 건축하는 공장을 제외한다)	· 준공업지역 : 3미터 이상 · 준공업지역 외의 지역 : 4미터 이상
나. 당해 용도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창고(전용공업지역 및 일 반공업지역 또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에서 건축하는 창고를 제외한다)	
다. 당해 용도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제곱미터 이상인 판매시설, 숙박시설(여관 및 여인숙을 제외한다),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식물원을 제외한다) 및 종교시설	· 3미터 이상
라. 다중이 이용하는 건축물로서 당해 용도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제곱미터 이상인 교육연구시설, 위락시설중 주점영업, 의료시설(종합병원·한방병원 및 요양병원에 한한다)	· 3미터 이상
마. 공동주택	아파트 : 4미터 이상연립주택 : 2미터 이상다세대주택 : 2미터 이상
바. 해당 용도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 이상 건축물로서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또는 자동차관련시설	・1미터 이상

(비고) 제1호에 따른 건축물의 부속용도에 해당하는 건축물(바닥면적의 합계가 50 제 곱미터 미만인 것에 한한다)에 대해서는 주된 용도에 적용되는 대지의 공지 기준 범위에서 2분의 1로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다만, 최소 0.5미터 이 상은 띄어야 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5조(건축공사현장 안전관리예	제15조(건축공사현장 안전관리예
치금 등) ① 법 제13조제2항 규	치금 등) ①
정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	
축물"이라 함은 국가 또는 지방	
자치단체가 건축하는 공용건축	
물을 제외한 연면적 <u>5천제곱미</u>	<u>1천제곱미</u>
<u>터</u> 이상인 건축물을 말한다.	<u>터</u>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제18조(가설건축물) ① (생 략)	제18조(가설건축물) ① (현행과
	같음)
② <u>영 제15조제5항제15호</u> 에서	② <u>영 제15조제5항제16호</u>
건축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 9. (생 략)	1. ~ 9. (현행과 같음)
제19조(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	제19조(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
무의 대행) ① 법 제22조제2항,	무의 대행) ①
법 제27조제1항 및 영 제20조제	
1항에 따라 허가대상 건축물에	
대한 건축허가·사용승인 및 임	
시사용승인과 관련되는 현장조	
사·검사 및 확인업무를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건	
축사로 하여금 대행하게 한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용도 변경(건축사가 설계하는 경우 에 <u>한한정다</u>) 허가를 위한 현 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는 해당 건축물을 설계한 건축사

3. (생 략) ② ~ ④ (생 략) <u><신 설></u>

2
한 한다
_

- 3. (현행과 같음)
-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19조의3(소규모 건축물 감리비 용에 관한 기준 등) ① 법 제25 조제12항에 따라 허가권자가 공 사감리자를 지정하는 소규모 건 축물 중 비상주감리의 감리비용 에 관한 기준은 「건축사법」제 19조의3에 따른 「공공발주사 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 「별표 5」'건축 공사감리 대가요율'의 100분 의 70으로 하고, 영 제 19조제5 항에 따른 상주감리의 감리비용 에 관한 기준은 같은 기준 제14 조제2항에 따라 실비정액가산 식으로 하며, 건축주는 공사감 리자와의 계약시 이를 준수하여 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감리비용 산출

시 공사비는 해당 건축공사의 공사내역서 또는 건물신축단가 표(한국감정원)의 용도별 평균 값을 적용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감리비용 산출 시 건축물의 종별 구분은 같은 기준의 [별표 3] '건축물의 종 별 구분'에 따른다.

④ 제2항에 따라 산출한 공사비가 [별표 5]에서 규정한 공사비의 중간에 있는 경우에는 직선 보간법에 따라서 다음과 같이산정한다.

$$Y = y1 - \frac{(X - x2)(y1 - y2)}{x1 - x2}$$

X: 당해금액 x1: 큰 금액 x2: 작은금액Y: 당해공사비 요율 y1: 작은금액 요율⑤율 y2: 큰금액 요율⑤건축주와 공사감리자는 제1항에 따라 산정된 건축공사 감리비의 10분의 1의범위에서 그 금액을 가중하거나 감경 할 수 있다.

⑥ 허가권자는 법 제25조제2항 에 따라 허가권자가 공사감리자 를 지정하는 건축물의 건축주가 <u><신</u>설>

사용승인을 신청할 때에는 감리 비용을 지불한 입금내역서, 세 금계산서, 통장사본 등을 제출 하도록 요구하여 적정한 감리비 용이 지불되었는지를 확인하여 야 한다.

제20조의2(주택관리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① 법 제35조의2 제2항 및 영 제23조의8의 규정 에 의거 군수는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주택법」제43조제1 항에 따른 관리주체 등이 관리 하는 공동주택은 제외한다)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기술지원 및 정보제공 등을 위하여 주택관리 지원센터를 설치 및 운영할 수 있다.

- ② 주택관리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전문가 10명 이내로 구성 하며, 센터장은 건축부서의 부 서장으로 한다.
- 건축·주택업무 담당 공무원
 건축사 또는 건축분야 기술
 사
- 3. 하동군 건축위원회 위원 중 분야별 전문가

제31조(이행강제금의 부과) 법 제 80조제1항 단서규정 및 <u>제4항</u>
단서규정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부과횟수 및 산정기준은 별표 4
에서 정하는 규정에 따른다.
<<u><신 설></u>

4.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관련 기사 자격증이 있는
사람으로서 건축분야에서 3년
이상 실무 경력이 있는 사람
③ 영 제23조의8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한 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
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
다. 다만, 업무와 직접 관련된
공무원은 제외한다.
 31조(이행강제금의 부과)
제5항
② 영 제115조의3제1항 단서에
따라 정하는 비율은 다음 각 호
와 같다. 다만, 위반사항이 두
가지 이상일 경우에는 그 중 높
은 비율을 적용한다.
<u>1. 건폐율을 초과하여 건축한</u>
경우: 100분의 60
2. 용적율을 초과하여 건축한 경우 : 100분이 60
<u>경우: 100분의 60</u>
3.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

<u>한 경우 : 100분의 70</u>

<신 설>

- 4.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 한 경우: 100분의 60
- 제31조의2(이행강제금 부과에 관한 특례) ① 법 제80조의2제1항 단서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간은 최초의 시정명령이 있었던 날부터 2년으로한다.
 - ② 영 제115조의4제1항제7호에 따라 건축조례로 정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이행강제금의 부과·징수 대 상자가 위반사항을 자진 신고 한 경우
 - 2. 허가(신고를 포함한다)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한 건축물의 허가를 추인 받고자 하는 경우(허가를 추인할 수 있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 3. 이행강제금의 부과·징수 대 상자가 「국민기초생활보장 법」에 따른 생계급여수급자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에 해당 하는 경우
 - 4. 천재지변이나 재해 등으로 건축물 멸실 후 허가(신고를

(74) 제 468 호

포함한다)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물을 건축한 경우 5. 법 제20조제3항을 위반한 경 오 ③ 영 제115조의4제2항제2호에 따라 건축조례로 정하는 비율은 100분의 50으로 한다.

관 련 법 령

□ 건 축 법

- 제13조(건축 공사현장 안전관리 예치금 등) ① 제11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은 자는 건축물의 건축공사를 중단하고 장기간 공사현장을 방치할 경우 공사현장의 미관 개선과 안전관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② 허가권자는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보 증공사가 분양보증을 한 건축물,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분양보증이나 신탁계약을 체결한 건축물은 제외한다)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제21조에 따른 착공신고를 하는 건축주(「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건축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지방공사는 제외한다)에게 장기간 건축물의 공사현장이 방치되는 것에 대비하여 미리 미관 개선과 안전관리에 필요한 비용(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증서를 포함하며, 이하 "예치금"이라 한다)을 건축공사비의 1퍼센트의 범위에서 예치하게 할 수 있다.
- 제25조(건축물의 공사감리) ① 건축주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규모 및 구조의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건축사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공사감리자(공사시공자 본인 및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계열회사는 제외한다)로 지정하여 공사감리를 하게 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소규모 건축물로서 건축주가 직접 시공하는 건축물 및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 중 대통령령으

(75) 제 468 호

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권자가 해당 건축물의 설계에 참여하지 아니한 자 중에서 공사감리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주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권자에게 신청하는 경우에는 해당 건축물을 설계한 자를 공사감리자로 지정할 수 있다.

- 1. 「건설기술 진흥법」 제14조에 따른 신기술을 적용하여 설계한 건축물
- 2.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13조제4항에 따른 역량 있는 건축사가 설계한 건축물
- 3. 설계공모를 통하여 설계한 건축물
- ③ ~ ⑩ (생략)
- ① 제2항에 따라 허가권자가 공사감리자를 지정하는 건축물의 건축주는 제21조에 따른 착공 신고를 하는 때에 감리비용이 명시된 감리 계약서를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제22조 에 따른 사용승인을 신청하는 때에는 감리용역 계약내용에 따라 감리비용을 지불하여야 한다. 이 경우 허가권자는 감리 계약서에 따라 감리비용이 지불되었는지를 확인한 후 사용승인을 하여야 한다.
- ② 허가권자는 제11항의 감리비용에 관한 기준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 제35조의2(주택의 유지·관리 지원) 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은 제외한다)의 소유자나 관리자가 제35조제1항에 따라 효율적으로 건축물을 유지·관리할수 있도록 건축물의 점검 및 개량·보수에 대한 기술지원 및 정보제공 등을 할 수 있다. <개정 2015.8.11.>
 - ②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기술지원 및 정보 제공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 및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에 주택관리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 ③ 제2항에 따른 주택관리지원센터의 설치·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4.5.28.]
- 제58조(대지 안의 공지)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용도지역·용도지구,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 등에 따라 건축선 및 인접 대지경계선으로 부터 6미터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거리 이상을 띄워야 한다. 〈개정 2011.5.30.〉
- 제80조(이행강제금) ① 허가권자는 제79조제1항에 따라 시정명령을 받은 후 시정기간 내에 시 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건축주등에 대하여는 그 시정명령의 이행에 필요한 상당한 이행기 한을 정하여 그 기한까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다음 각 호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다. 다만, 연면적(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세대 면적을 기준으로 한다)이 85제곱미터 이하인 주 거용 건축물과 제2호 중 주거용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

(76) 제 468 호

<u>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금액을</u> 부과한다. <개정 2011.5.30., 2015.8.11.>

- 1. 건축물이 제55조와 제56조에 따른 건폐율이나 용적률을 초과하여 건축된 경우 또는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된 경우에는 <u>「지방세법」에 따라 해당 건축물에 적용되는 1제곱미터의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에 위반면적을 곱한 금액 이하의 범위에서 위반 내용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u>
- 2. 건축물이 제1호 외의 위반 건축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세법」에 따라 그 건축물에 적용되는 시가표준액에 해당하는 금액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위반내용에 따라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금액
- ② 허가권자는 영리목적을 위한 위반이나 상습적 위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제1항에 따른 금액을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가중할 수 있다. <신설 2015.8.11.>
- ③ ~ ④ (생 락)
- ⑤ 허가권자는 최초의 시정명령이 있었던 날을 기준으로 하여 1년에 2회 이내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횟수만큼 그 시정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u>다만,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하면 총 부과 횟수가 5회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부과 횟수를 따로 정할 수 있다.</u> <개정 2014.5.28., 2015.8.11.>
- ⑥ ~ ⑦ (생 락)
- 제80조의2(이행강제금 부과에 관한 특례) ① 허가권자는 제80조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감경할 수 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간까지 위반내용을 시정하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한다.
 - 1. 축사 등 농업용·어업용 시설로서 500제곱미터(「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 외의 지역에서는 1천제곱미터) 이하인 경우는 5분의 1을 감경
 - 2. 그 밖에 위반 동기, 위반 범위 및 위반 시기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제 80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2분의 1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 율을 감정
 - ② 허가권자는 법률 제4381호 건축법개정법률의 시행일(1992년 6월 1일을 말한다) 이전에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주거용 건축물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80조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감경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5.8.11.]

□ 건축법 시행령

제23조의8(주택관리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군수 ·구청장이 법 제35조의2제2항에 따라 건축물의 점검 및 개량·보수에 대한 기술지원 및 정 보제공 등을 위하여 설치하는 주택관리지원센터는 건축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공무원

과 건축사 등 건축 관련 전문가로 구성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주택관리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에 관한 기술지원 및 정보제공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 1. 건축물의 에너지효율 및 성능 개선 방법
- 2. 누전(漏電) 및 누수(漏水) 점검 방법
- 3. 간단한 보수 및 수리 지원
- 4. 건축물의 유지·관리에 대한 법률 상담
- 5. 건축물의 개량·보수에 관한 교육 및 홍보
- 6. 그 밖에 건축물의 점검 및 개량・보수에 관하여 건축조례로 정하는 사항
- ③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주택의 소유자나 관리자가 법제35조제1항에 따라 효율적으로 건축물을 유지·관리할 수 있도록 제1항에 따른 건축물의점검 및 개량·보수에 대한 기술지원 및 정보제공 등에 필요한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해당지방자치단체의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 제115조의3(이행강제금의 탄력적 운영) ① 법 제80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말한다. <u>다만, 건축조례로 다음 각 호의 비율을 낮</u>추어 정할 수 있되, 낮추는 경우에도 그 비율은 100분의 60 이상이어야 한다.
 - 1. 건폐율을 초과하여 건축한 경우: 100분의 80
 - 2. 용적률을 초과하여 건축한 경우: 100분의 90
 - 3.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한 경우: 100분의 100
 - 4.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한 경우: 100분의 70
 - ② 법 제80조제2항에서 "영리목적을 위한 위반이나 상습적 위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위반행위 후 소유권이 변경된 경우는 제외한다.
 - 1. 임대 등 영리를 목적으로 법 제19조를 위반하여 용도변경을 한 경우(위반면적이 50제곱 미터를 초과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 2. 임대 등 영리를 목적으로 허가나 신고 없이 신축 또는 증축한 경우(위반면적이 50제곱미 터를 초과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 3. 임대 등 영리를 목적으로 허가나 신고 없이 다세대주택의 세대수 또는 다가구주택의 가구 수를 증가시킨 경우(5세대 또는 5가구 이상 증가시킨 경우로 한정한다)
 - 4. 동일인이 최근 3년 내에 2회 이상 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경우
 -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과 비슷한 경우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경우

[본조신설 2016.2.11.]

[종전 제115조의3은 제115조의5로 이동 <2016.2.11.>]

(78) 제 468 호

- 제115조의4(이행강제금의 감경) ① 법 제80조의2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법 제8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1. 위반행위 후 소유권이 변경된 경우
 - 2. 임차인이 있어 현실적으로 임대기간 중에 위반내용을 시정하기 어려운 경우(법 제79조제1항에 따른 최초의 시정명령 전에 이미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로서 해당 계약이 종료되거나 갱신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등 상황의 특수성이 인정되는 경우
 - 3. 위반면적이 3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별표 1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건축물로 한정하며,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집합건축물은 제외한다)
 - 4.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집합건축물의 구분소유자가 위반한 면적이 5제곱미터 이하인 경우(별표 1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건축물로 한정한다)
 - 5. 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 당시 존재하던 위반사항으로서 사용승인 이후 확인된 경우
 - 6. 법률 제12516호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9조에 따라 같은 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기간 내에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거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려는 배출시설(처리시설을 포함한다)의 경우
 - 7.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와 위반 동기 및 공중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감경이 필요 한 경우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경우
 - ② 법 제80조의2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말한다.
 - 1. 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경우: 100분의 50
 - 2. 제1항제7호의 경우: 건축조례로 정하는 비율
 - ③ 법 제80조의2제2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감경 비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연면적 85제곱미터 이하 주거용 건축물의 경우: 100분의 80
 - 2. 연면적 85제곱미터 초과 주거용 건축물의 경우: 100분의 60

[별표 2] <개정 2016. 7. 19.>

대지의 공지 기준(제80조의2 관련)

1. 건축선으로부터 건축물까지 띄어야 하는 거리

대상 건축물	건축조례에서 정하는 건축기준
가.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공장(전용공업지역, 일반공업지역 또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에 건축하는 공장은 제외한다)으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 준공업지역: 1.5미터 이상 6미터 이하 · 준공업지역 외의 지역: 3미터 이상 6미터 이하
나.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창고(전용공업지역, 일반공업지역 또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에 건축하는 창고는 제외한다)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 준공업지역: 1.5미터 이상 6미터 이하 · 준공업지역 외의 지역: 3미터 이상 6미터 이하
다.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제곱미터 이상인 판매시설, 숙박시설 (일반숙박시설은 제외한다), 문화 및 집회 시설(전시장 및 동·식물원은 제외한다) 및 종교시설	· 3미터 이상 6미터 이하
라. 다중이 이용하는 건축물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 3미터 이상 6미터 이하
마. 공동주택	 아파트: 2미터 이상 6미터 이하 연립주택: 2미터 이상 5미터 이하 다세대주택: 1미터 이상 4미터 이하
바. 그 밖에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 1미터 이상 6미터 이하(한옥의 경우에는 처마선 2미터 이하, 외벽선 1미터 이상 2미 터 이하)

2.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건축물까지 띄어야 하는 거리

)) -1 ÷ n	
대상 건축물	건축조례에서 정하는 건축기준
가. 전용주거지역에 건축하는 건축물(공동주 택은 제외한다)	·1미터 이상 6미터 이하(한옥의 경우에는 처마선 2미터 이하, 외벽선 1미터 이상 2미 터 이하)
나.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공장(전용공업지역, 일반공업지역 또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에 건축하는 공장은 제외한다)으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 준공업지역 외의 지역: 1.5미터 이상 6미
다. 상업지역이 아닌 지역에 건축하는 건축물로서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제곱미터 이상인 판매시설, 숙박시설(일반숙박시설은 제외한다),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식물원은 제외한다) 및 종교시설	· 1.5미터 이상 6미터 이하
라. 다중이 이용하는 건축물(상업지역에 건축하는 건축물로서 스프링클러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자동식 소화설비를 설치한 건축물은 제외한다)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 1.5미터 이상 6미터 이하
마. 공동주택(상업지역에 건축하는 공동주택으로서 스프링클러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자동식 소화설비를 설치한 공동주택은 제외한다)	· 아파트: 2미터 이상 6미터 이하 · 연립주택: 1.5미터 이상 5미터 이하 · 다세대주택: 0.5미터 이상 4미터 이하
바. 그 밖에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 0.5미터 이상 6미터 이하(한옥의 경우에는 처마선 2미터 이하, 외벽선 1미터 이상 2미 터 이하)

비고

- 1) 제1호가목 및 제2호나목에 해당하는 건축물 중 법 제11조에 따른 허가를 받거나 법 제14조에 따른 신고를 하고 2009년 7월 1일부터 2015년 6월 30일까지 및 2016년 7월 1일부터 2019년 6월 30일까지 법 제21조에 따른 착공신고를 하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기준을 2분의 1로 완화하여 적용한다.
- 2) 제1호에 해당하는 건축물(별표 1 제1호, 제2호 및 제17호부터 제19호까지의 건축물은 제외한다)이 너비가 20미터 이상인 도로를 포함하여 2개 이상의 도로에 접한 경우로서 너비가 20미터 이상인 도로(도로와 접한 공공공지 및 녹지를 포함한다)면에 접한 건축물에 대해서는 건축선으로부터 건축물까지 띄어야 하는 거리를 적용하지 않는다.
- 3) 제1호에 따른 건축물의 부속용도에 해당하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주된 용도에 적용되는 대지의 공지 기준 범위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다만, 최소 0.5미터 이상은 띄어야 한다.

□ 엔지니어링기술 진흥법

- 제31조(엔지니어링사업의 대가 기준 등) ① 발주청은 엔지니어링사업자와 엔지니어링사업의 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적정한 엔지니어링사업의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의 대가를 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준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기획재정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등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③ 엔지니어링사업자는 엔지니어링사업을 수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해당 발주청 또는 제 3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배상하여야 한다.
 - ④ 엔지니어링사업자는 제3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발주청은 보험이나 공제가입에 따른 비용을 제1항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 대가에 계상(計上)하여야 한다.
 - ⑤ 제4항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의 기간·종류·대상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하동군 공고 제2016-1033호

하동군 옥외광고물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하동군 옥외광고물등 관리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하동군 법무행정 처리 규정」 제7조제2항에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0월 20일

하 동 군 수

- 1. 자치 법규명 : 하동군 옥외광고물등 관리 조례
- 2. 제안이유: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이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진흥에 관한 법률」로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 령에 부합되도록 인용조문을 개정하고,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고자 함.
- 3. 주요 내용 :
 - 가.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변경(안 제1조, 제2조)
 -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 나. 전자게시대 표출 관리 근거 마련 및 전자게시대 설치 기준 완화 (안 제5조의2)

(83)제 468 호

4. 의견 제출 : 이 자치 법규의 입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개인은 2016년 11월 9일까지 하동군(참조 : 도시건축과, 전화 055-880-2136, FAX 055-880-2109, yooduk0@korea.kr)
 에게【별지 서식】에 따라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지서식】 가.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 붙임 1. 하동군 옥외광고물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별표, 별지서식 포함)
 - 2. 신구조문대비표, 관련법령 등

<u> </u>	_ /		100	_
	' 111	1 ■		
ı	맫	기】		
	、ピ	· 4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 성명(단체명) :			
○ 주 소:			
○ 전 화 번 호 :			
조례(규칙)안 내용	의	견	비고

조례 제 호

하동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하동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한다.

제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2(전자게시대의 표출관리) ① 영 제16조제5항에 따른 전자게시대는 다음 기준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 1. 하나의 업소 또는 신청인은 동시에 2개소 이하의 전자게시대에 표출할 수 있으며, 하나의 전자게시대에는 같은 업소 또는 같은 내용을 시간당 표출비율의 100분의 5 이하를 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제6조제2항에 따른 국가 등의 공공목적 광고 또는 다른 게시신청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2. 전자게시대 표출기간은 1회 15일 이내로 하며, 같은 업소 또는 같은 내용을 같은 전자게시대에 2회 이상 계속하여 표출할 수 없다. 다만, 다른 표출신청이 없거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86) 제 468 호

- 3. 표출신청이 표출 가능한 수량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전산에 의한 추첨, 공개추점, 접수의 순 등 공정한 방법으로 표출 대상을 선정하여 야 하며, 군수는 선정방법을 미리 정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표출할 수 없다.
 - 가. 법 제5조에 따른 금지광고물
 - 나. 특정 개인 또는 단체를 비방하는 목적의 내용
 - 다. 그 밖에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 어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군수가 정하는 사항
- ② 군수는 영 제14조제3항제4호에도 불구하고 교통신호기와 혼동이 되지 아니하도록 관할 경찰서장과 협의한 경우에는 교통신호기로부터 보이는 직선거리 20미터 이내의 지역에도 게시대를 설치할 수 있다.
- ③ 그 밖에 표출에 따른 비용의 징수 및 전자게시대의 설치·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정하여 공고하는 바에 따른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u>「목외광</u>	제1조(목적) <u>「목외광</u>
<u>고물 등 관리법」</u> 및 같은 법	<u>고물 등의 관리와 목외광고산업</u>
시행령과「경상남도 목외광고	<u> 진흥에 관한 법률」</u>
물 등 관리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옥외광고물 등의 허가 및	제2조(옥외광고물 등의 허가 및
신고의 제출서류 등) ① <u>「옥외</u>	신고의 제출서류 등) ① <u>「옥</u>
<u>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u> (이	<u>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u>
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1항	<u>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u>
의 단서규정에 따라 옥외광고물	<u>령」</u>
또는 게시시설(이하 "광고물 등	
"이라 한다)을 표시 또는 설치	
(이하 "표시"라 한다)하기 위하	
여 허가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광고물 등은 영 제7조제1	
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원색	
사진, 설명서 및 설계 도서를 제	
출하지 아니 할 수 있다. 다만,	
영 제14조제3항 및 제4항에 따	
라 네온류 또는 전광류를 사용	
하는 광고물 등은 제외한다.	
1. ~ 7. (생 략)	1. ~ 7. (현행과 같음)

②·③ (생 략) <u><신 설></u>

- ②·③ (현행과 같음)
- 제5조의2(전자게시대의 표출관리)
 ① 영 제16조제5항에 따른 전자
 게시대는 다음 기준에 따라 관
 - 1. 하나의 업소 또는 신청인은 동시에 2개소 이하의 전자게 시대에 표출할 수 있으며, 하나의 전자게시대에는 같은 업소 또는 같은 내용을 시간당표출비율의 100분의 5 이하를 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국가 등의 공공목적 광고 또는 다른 게시신청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2. 전자게시대 표출기간은 1회 15일 이내로 하며, 같은 업소 또는 같은 내용을 같은 전자 게시대에 2회 이상 계속하여 표출할 수 없다. 다만, 다른 표출신청이 없거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3. 표출신청이 표출 가능한 수 량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전산

에 의한 추첨, 공개추점, 접수의 순 등 공정한 방법으로 표출 대상을 선정하여야 하며, 군수는 선정방법을 미리 정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사항은 표출할 수 없 다.
 - <u>가. 법 제5조에 따른 금지광</u> 고물
 - <u>나. 특정 개인 또는 단체를 비</u> 방하는 목적의 내용
 - 다. 그 밖에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할 우려가있다고 판단되어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군수가 정하는 사항
- ② 군수는 영 제14조제3항제4호 에도 불구하고 교통신호기와 혼 동이 되지 아니하도록 관할 경 찰서장과 협의한 경우에는 교통 신호기로부터 보이는 직선거리 20미터 이내의 지역에도 게시대 를 설치할 수 있다.
- ③ 그 밖에 표출에 따른 비용의 징수 및 전자게시대의 설치·관

(90)제 468 호

<u>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군</u> <u>수가 정하여 공고하는 바에 따</u> <u>른다.</u>

관 계 법 령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지주 이용 간판의 표시방법) ① 건물의 부지 안에 설치하는 지주 이용 간판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

- 1. 건물을 사용하고 있는 자의 성명·주소·상호·전화번호 또는 이를 상징하는 도형(주유소 또는 가스충전소의 표시등을 포함한다)만 표시할 수 있다.
- 2. 삭제 <2016.7.6.>
- 3. 그 밖에 건물의 부지 안에 설치하는 지주 이용 간판의 표시에 관하여 시·도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한다.
- ② 건물의 부지 밖에 설치하는 지주 이용 간판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
- 1. 너비가 6미터 이상인 도로변의 가장 가까운 지점에서 직접 보이지 아니하는 업소 등만 표시할 수 있다.
- 2. 전기를 사용해서는 아니 되며, 녹색·청색 등 각종 도로표지·교통안전표지 등 의 색상과 혼동될 우려가 있는 색깔을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 3. 표시내용은 특정한 지역·장소·건물 또는 업소 등의 명칭·위치 등을 유도하거나 안내하는 것만 표시할 수 있다.
- 4. 그 밖에 건물 부지 밖에 설치하는 지주 이용 간판의 표시방법에 관하여 시·도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한다.
- ③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24조제2항제6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가림간판인 지주 이용 간판의 표시방법은 시·도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도지사가 따로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도시지역 외의 지역의 고속국도·일반 국도·지방도 또는 군도의 도로경계선으로부터 수평거리 500미터 이내인 지역에

대해서는 그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경찰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6.21.>

- ④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24조제2항제6호라목에 따른 가설울타리에 설치하는 지주 이용 간판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
- 1. 가설울타리에 직접 도료 등으로 표시하여야 하며, 전기를 사용해서는 아니된다.
- 2. 시공자·발주자 등 공사내용을 알리거나 공공의 목적을 위한 내용만 표시할 수 있다.
- 3. 그 밖에 시·도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도지사가 따로 정하는 사항이 있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 ⑤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시장등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제29조제2항 각 호의 법인(이하 "국가등"이라 한다)이 공공의 목적을 위하여 광고를 표시하도록 하거나 관할구역 안에 있는 소상공인·전통시장 등을 홍보하기 위한 광고를 표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디지털광고물인 지주 이용 간판(이하 "전자게시대"라 한다)을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16.7.6.〉
- 1. 전자게시대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 설치할 수 있다.
- <u>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업지역·공업지역</u>
- <u>나.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지·관광단지·관광특구</u>
- 다. 그 밖에 시·도 조례로 정하는 지역
- 2. 전자게시대의 표시방법은 제14조를 따른다.
- 3. 교통신호기와 가까운 거리에 있는 전자게시대의 경우로서 교통신호 기와 혼동이 되지 아니하도록 관할 경찰서장과 협의하여 설치하는 경우에는 제14조제3항제4호의 기준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완화하여 적용할수 있다.
- 4. 전자게시대 간 수평거리는 100미터 이상으로서 시·도 조례로 정하는 거리이상 이어야 한다.
- 5. 광고내용의 표시면적은 12제곱미터 이내이어야 한다.

[전문개정 2011.10.10.]

[제20조에서 이동 <2011.10.10.>]

하동군 공고 제2016-1056호

하동군 공용차량 관리 규칙 일부 개정 계획

하동군 공용차량 관리 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하동군 법무행정처리규정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1월 7일 **하 동 군 수**

- 1. 자치법규명 : 하동군 공용차량 관리 규칙
- 2. 개정이유
 - 2003년 개정된 공용차량 기준정수는 승용차량의 보유수량을 제한하여 행정업무 수행 시 필연적으로 차량이 필요한 현 상황과 맞지 않아 경ㆍ 소형ㆍ다목적차량의 기준정수를 완화함으로써 차량정수관리에 만전을 기 하고자 함.
- 3. 개정조례안 주요내용
 - 별표 2 차량의 기관별 기준정수 일부 개정
 - 경·소형 및 찦형, 다목적 승용차의 기준정수량를 「사업의 성격, 업무량 등을 종합검토하여 적정한 규모와 대수 배 정」으로 개정

4. 의견제출

- 의견제출 : 이 자치 법규의 입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6년 11월 28일까지 하동군(참조 : 재정관리과, 전화 055-880-2303 / FAX 055-880-2279, ttakkom@korea.kr)에 【별지 서식】에 의거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별지서식】가.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하동군 규칙 제 호

하동군 공용차량 관리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하동군 공용차량 관리 규칙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2]

차량의 기관별 기준정수(제6조 관련)

1. 승용차량 기준정수

	기주	<u>규 모 별</u>			
차량정수 배정대상기관	기준 정수	대형승용차	중형승용차	경형·소형 및 지프형, 다목적형 승용차	
군 본청	3대	<u>2대</u> (군수·부군수 전용)	1대 (업무용)	사업의 성격, 업무량	
군 의회(의회사무과)	1대	1대(의장 전용)	-	등을 종합 검토하여 적정한 규모와 대수 배정	
그 외	_	_	_		

- 2. 승합용·화물·특수용 차량 기준정수
 - 사업의 성격, 업무량 등을 종합 검토하여 적정한 규모와 대수 배정

신·구조문대비표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별표2] 1. 승용	차량 기준정	수				[별표2] 1. 승용차링	: 기준	<u></u> 등정수		
71	라고 시	71.5		규 모 별		차량정수	차량정수 기준 _		규 모 별	
사 배정 	량정수 대상기관	기준 정수	대형승용차	중형승용차	경영 및 쩊 다 주 송화	배정대상기관	정수	대형승용차	중형승용차	경형·소형 및 지프형, 다목적형 승용차
-	· 본청	3대	<u>2대</u> (군수 · 부군수 전용)	1대(업무용)	4대	군 본청	3대	2대 (군수부군수 전용)	1대 (업무용)	사업의 성격,
	정원 200명 0상	2			2대	군 의회	1.011	1대		업무량 등을 종합 검토하여 적정한
4급기관징 사업소	정원 100명 0상	2			2대	(의회사무과)	1대	(의장 전용)	_	규모와 대수 배정
	정원 100명 미만	1			1대	그 외	_	_	_	
5급기관징 사업소	정원 30명 0상	1			1대					
	인구42명 0상	2			2대					
OII	인구 2만명 0상	1			1대					
군 의회	(의회사무과)	2대	1대 (의장전용)		1대					
- 사	합용·화물·특수 업의 성격, 정한 규모외	업무량	냥 등을 종		F CA	2. (현행유)	시)			

(96) 제 468 호

하동군공고 제2016-1034호

2016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및 이의신청 안내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0조 동법 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의거 2016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하오니, 공시가격에 이의가 있으신 토지소유자 및 이해 관계인은 기간 내에 이의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1. 가 격 기 준 일 : 2016. 07. 01.

2. 결 정・공 시 일 : 2016. 10. 31.

3. 결정・공시 필지수 : 1,845필지

읍·면	결정필지수	읍·면	결정필지수	읍·면	결정필지수
하동읍	224필	고전면	102필	북천면	81필
화개면	161필	금남면	320필	청암면	75필
악양면	141필			- ,	_
적량면	99필	진교면	176필	옥종면	208필
횡천면	75필	양보면	88필	금성면	95필

4. 결정・공시내용 : 토지지번별 ㎡당 가격

(토지지번별 개별공시지가 내역은 군청 민원과 및 읍·면 사무소에 비치)

- 5. 이의신청 및 처리
 - 이의신청
 - 신청기간 : 2016. 10. 31. ~ 11. 29.
 - 신 청 자 : 토지소유자 및 기타 이해관계인
 - 신청방법

(서면) 군청 민원과 및 읍·면시무소에 비치된 이의신청서 작성제출, 우편 접수 가능 (전자민원) 정부민원포털 민원24(http://www.minwon.go.kr)에서 온라인 민원신청

- 이의신청에 대한 처리
 - 이의신청된 필지는 이의신청이 만료된 날부터 30일이내에 현지조사 및 감정평가사의 재검 증과 하동군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그 처리결과를 알려드리며,
 - 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6. 기타사항

하동군 홈페이지에서도 개별공시지가를 확인할 수 있으며, 기타사항은 하동군청 민원과 부동산관리담당부서(055-880-2121~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6 년 10 월 31 일

하 동 군 수

(97) 제 468 호

하동군공고 제2016-1041호

개별주택가격 정정 공고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제13조,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규정에 따라 2015년 1월 1일 기준 및 2016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 정정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가 격 기 준 일 : 2015. 1. 1. 및 2016. 1. 1.

2. 정정가격 결정・공시일 : 2016. 11. 1.

3. 정정가격 결정・공시 호수 : 1호

주택소재	기준일자	결정가격	정정가격	비고
화개 범왕	2015. 1. 1	132,000,000원	155,000,000원	대지면적, 용도지역면적,
1509-1	2016. 1. 1	139,000,000원	165,000,000원	산정면적 착오기재

4. 행정사항

본 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 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5. 기타사항

하동군 홈페이지에서 개별주택가격을 확인할 수 있으며, 기타사항은 민원과 부동 산평가담당부서(☎055-880-2121~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6 년 11 월 1 일

하 동 군 수